

연구보고 2008-

# 산업구조 전환과 자원순환 촉진 법체계의 연구

전 재 경

# 산업구조 전환과 자원순환 촉진 법체계의 연구

Legal System of Industrial Structure  
and Waste Management

연구자 : 전재경(연구위원)

Chun Jae-Kyong

2008. 10. 31.

## 국문 요약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8년의 전문 개정에 의하여 주요쟁점들이 다수 정리되었으나 여전히 법의 기능에 비하여 법의 명칭이 크고 목적이 광범위하다. “산업구조”의 범주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경친화적”이라는 개념을 목록(agenda)화하기 어렵다는 내재적 한계 등이 존재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에 관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법률의 명칭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경친화”라는 비전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산업환경실천과제(법 제4조)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종합시책(법 제3조)이 먼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 법제 부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이미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제로 자원순환의 객체인 순환자원의 개념을 재정립한 다음에 이를 폐기물의 개념과 구별하고자 한다. 순환자원의 독자성은 순환사회의 형성 체계를 간명하게 만들 것이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이 명료하게 정립될 경우에는 양자의 사무관할도 분명해질 것이다.

“폐기물 관리”라는 개념에 종속되지 아니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의한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잔여물 또는 배출물을 최소화시키거나 이를 다시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가계·정부 또는 그 연대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의에서는 “부산물·잔여물 또는 배출물의 최소화”에 종래의 “폐기물 발생억제”(reduce)가 포함된다.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종래의 “폐기물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이 포함된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 정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순환사회론에서 언급하는 “자원”은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자원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경제활동 구조 속에 편입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자원순환”이라 함은 “어떠한 제품·부품 또는 원료가 생산·유통 또는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부산물 또는 기타의 물질이나 에너지 등이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활용가능한 최적의 기술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원료로 저장되거나 다시 생산 등에 투입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을 연역해 낸 순환사회 형성과 관련된 법이 지향하는 바와 달리 “순환사회” 이전의 패러다임이다. 개념 논리상 “순환자원”은 폐기물에 선행하여야 한다. 미국 법(RCRA)은 “폐기물”만을 환경청의 규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닌 재활용품을 폐기물과 구분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순환자원의 개념과 폐기물의 개념을 준별함으로써 순환사회의 환경법적 패러다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가 순환사회를 지향한다면, “폐기물” 체계에서 벗어나 “순환자원”의 개념을 선행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즉 순환자원 이후 단계의 “활용 불가능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하는 한편 “폐기물”의 개념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개념을 “순환자원”으로 바꾸는 한편 “순환자원”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다시 투입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폐기물’ 중 기술의 발달이나 경제적 가치·수요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얻어 순환성을 회복한 것을 포함한다)”로 재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

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중 순환자원으로 쓸 수 없는 물질 또는 에너지(‘순환자원’중 변형·변질되거나 경제적 가치·수요가 변하여 더 이상 순환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을 포함한다)”로 재정의하고, 활용가능한 최적의 기술(BAT) 수준으로 자원의 유효한 순환이 불가능한 물질만을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패러다임, 산업구조, 국가표준, 산업표준,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생산자책임, 쓰레기, 폐기물,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경제적 가치

## Abstrac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ome to change the paradigm of solid wastes management as well as consolidation of planning or design and recycling of products or components. Solid wastes was deemed to discarded materials for a long time everywhere in the world. Nowadays, many advanced countries of OECD like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U.S.A. has taken steps to adapt their waste management system into recycling-friendly society.

Korea has also taken steps so far to change the environment-friendly industry structure in the up-stream and the waste management paradigm in the down-stream.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so-called the producer liability into the Save of Resources and Acceleration of Recycling Act of 1992 and the Revision Act thereof 2002. The Save of Resources and Acceleration of Recycling Act of 2008 adopt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circulation of resources” and the principles to execute this concept.

But it is yet unsatisfactory that the concept of “discarded material” which consist of the concept of “abandoned” or “disposed of” reign over the concept of “circular resources”, that is, “material capable of reuse or recycling” in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 The recycling concept, for example, is yet explained by way of the waste concept as following : “the circular resources in the statute has the meaning of the useful things among wastes etc.”

For the purpose of new paradigm toward sustainable society, the concept of waste and circular resources should be defined again and separately. The definition of circular resources in the statutes concerned should be changed

into like this : “the circular resources means materials or energy having economic values to re-product, re-distribute or re-consume among garbages, by-products or discharged materials accompanying to economic activities like production, distribution or consumption of goods or services.”

As a result of this definition about circular resources, the definition of waste in the statutes concerned should also be changed into like this : “the waste means discarded material or energy without economic values among garbages, by-products or discharged materials accompanying to economic activities, or material or energy very difficult to recycle or reuse, even if it has some economic values. There are several sections of statutes concerned which should be revised afterwards to harmonize each other according to such change of definition.

※ Key words : paradigm, recycling-friendly society, producer liability, waste, discarded materials, circular resources, reduce, recycle, reuse, economic values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3
1. 연구배경 .....	13
2. 연구목적 .....	15
3. 연구범위 · 방법 .....	17
제 2 장 현행법제의 구조와 과제 .....	19
1. 연관분석 .....	19
(1) 개 관 .....	19
(2) 산업구조-자원순환의 연관성 .....	20
(3) 산업구조-국가표준의 연관성 .....	21
(4) 산업구조-산업표준의 연관성 .....	22
2. 산업구조 전환 부문 .....	24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24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41
(3) 표준화 .....	46
3. 자원순환 촉진 부문 .....	5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52



(2) 폐기물관리법 .....	59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	67
(5) 해양환경관리법 .....	70
제 3 장 외국법제분석 .....	75
1. 영국법제 분석 .....	75
(1) 국가폐기물전략 .....	76
(2) 생산자책임 .....	79
(3) 가정 폐기물 재활용법 .....	85
(4) 폐기물 수집당국의 재활용계획 .....	86
(5) 폐기물 및 배출권거래법 .....	89
2. 일본법제 분석 .....	91
(1) 순환형 사회경제 구축과 기본적 구조 .....	92
(2) 순환형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법체계와 내용 .....	95
(3)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106
(4)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123
제 4 장 법제정비 방향 .....	133
1. 쟁점분석 .....	133
(1) 통합적 관리 .....	134
(2) 산업구조의 전환 부문 .....	136
(3) 자원순환의 촉진 부문 .....	138
2. 결론 및 대안 .....	143
(1) 적용범위의 조정 .....	144

(2) 법적개념의 정리 .....	146
(3) 법률상호간의 정합성 .....	151
(4) 자원순환형 체계를 위한 대안 .....	154

참 고 문 헌 .....	159
---------------	-----

# 제 1 장 서 론

## 1. 연구배경

오늘날 국제 환경법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생물종 다양성(bio-diversity)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다가온다.<sup>1)</sup> 이에 따라 국제 환경규제의 동향 및 선진국의 산업환경 정책은 과거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제품과 원료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가 자원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용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와 재활용의 각 단계에서 자원사용의 효율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환경규범은 국내 환경법 질서의 재편을 요구한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지향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산업·교통·건축·에너지·폐기물 등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 영역에서 설계·생산·유통·소비 등의 양식이 바뀌어야 하고 관련 법률들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법제, 재정지원을 돕는 금융법제 그리고 탄소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관련 법제 등의 동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종래 폐기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재활용 체계는 이제 “순환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생활양식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1) 기후변화협약(1992)(UNFCCC)은 교토의정서(1997)를 거쳐 2000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의는 교토의정서체제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非부속서 I 당사국』으로 인정되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아니하지만 2012년 이후의 협상결과에 대비하여야 한다. 종래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사회경제 시스템이나 자연시스템 즉 ‘수용체’가 받는 영향과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노력보다는 온실가스의 배출 자체를 줄이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철저한 대비가 없을 경우에 선진기술에 종속되거나 기술수지의 적자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생산 공정이나 소비 단계에서 재활용 등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관념은 초기 “폐기물의 관리”에서 “자원순환의 문제”로 이행되다가 작금에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의 순환”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는 “순환사회”의 관념이 도입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와 산업구조의 전환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법제연구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당위성에 직면하였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는 개념 논리상 제품의 설계 및 생산 즉 상류부문(up-stream)과 그 유통 및 소비 즉 하류부문(down-stream)이 서로 연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 이후의 유희자원 내지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즉 『자원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산업 법제와 자원순환을 촉진시키는 환경 법제는 유기적인 정합성이 중요하다.

한편 환경법은 폐기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폐기물의 개념이 순환자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또는 순환자원을 규율하는 법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둘러싼 국민의식과 정책이 눈부시게 변화하는 가운데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역설이 유지되고 있다. 의식과 정책은 순환자원 내지 자원순환에 다다랐는데

법제는 여전히 폐기물에 머무르고 있다. 관련 정책과 법제간의 이러한 부조화는 순환사회의 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폐기물의 개념이 먼저 생기고 순환자원의 개념이 나중에 생겼다는 법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폐기물의 개념으로부터 순환자원을 연역해 넘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순환자원으로부터 폐기물의 그림자를 지워야 한다. 순환자원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폐기물의 개념에서 순환자원의 개념을 연역해 넘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행정청의 관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기물이 상위개념이라면 폐기물을 관할하는 행정청이 순환자원까지 관할하게 된다. 이러한 집행구조는 폐기물 관리체계와 구별되는 순환사회 형성체계의 독자성을 방해한다.

## 2. 연구목적

지식경제부 소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 명칭과 목적에 비하여 내용과 수단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기에 미흡하고<sup>2)</sup>,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순환을 저해하는 제품의 설계(표준화·규격화를 포함한다)와 생산 및 유통에 개선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어 두 법제 간의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와 소통이 미흡하다. 우선, 이 연구는 물질자원의 흐름에서 설계 및 생산의 상류(up-stream)부문과 유통 및 소비의 하류(down-stream)부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2)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권고의견(2003.3.4) : “지속가능한 산업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 친환경 산업발전과 관련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및 생산 촉진법(가칭)』으로 개정하여 모든 산업정책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환 촉진을 지원하는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에 필수적인 청정생산 체제를 효율적으로 도입·확산시키고 관련 법률간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재활용과 재제조 등 부문별 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자체의 전환이나 “자원절약과 재활용” 자체의 촉진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 이 연구는 양자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들을 개선하고, 상승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법적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제는 경우에 따라 변화를 가로막는 역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산업혁신과 환경보전의 연계를 가로막는 기성의 법률체계를 조정함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폐기물의 개념과 순환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이 이미 자원순환 내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제로 자원순환의 객체인 순환자원의 개념을 재정립한 다음에 이를 폐기물의 개념과 구별하고자 한다. 순환자원의 독자성은 순환사회의 형성 체계를 간명하게 만들 것이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이 명료하게 정립될 경우에는 양자의 사무관할도 분명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위와 기능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이바지함을 제2의 목적으로 한다. 먼저 폐기물의 개념이 변하면 - 그 범주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면 - 폐기물관리법의 기능이 변하고 그 적용범위가 바뀔 것이다. 다음에 순환자원의 개념이 변하면 - 그 범주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능이 변하고 그 적용범위도 바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재활용과 관련된 법률들의 계열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행법제는 순환사회의 형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정작 자원순환의 개념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순환자원의 개념에 기초한 자원순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순환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가칭)순환사회형성촉진법 또는 (가칭)자원순환기본법의 출현에 대비함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요소이다. 순환사회의 형성은 폐기물 이전의 순환자원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폐기물로부터 독립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요한다.

### 3. 연구범위 · 방법

자원순환형 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법률로서는 생산 단계에 주목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 및 소비단계에 주목하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이 법률들은 소관부서가 다르고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가 약간씩 다르지만, 자원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데 함께 이바지한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단계에서 유통과 소비단계의 자원순환을 고려하고 유통과 소비단계에서 생산단계의 자원순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순환형사회 형성 촉진법』 또는 (가칭)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스럽겠지만 이러한 기본법안의 연구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산업구조”는 전체 산업구조가 아닌 자원순환과 관련된 재활용·재생산·재제조 등의 산업구조를 말한다. “폐기물”은 고상 또는 액상 폐기물을 말한다. “에너지”는 폐기물에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제3조)이 다른 법률의 관할로 넘긴 방사성물질, 기체상태물질, 폐수, 오수·분뇨, 가축분뇨, 하수, 가축사

체, 또는 수산동물사체는 순환성(재활용가능성) 유무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이 규율하는 “지정폐기물”에도 순환자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별도 관리 폐기물들에 대하여서는 순환자원 관리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논하지 아니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비교법 연구를 주된 방법론으로 한다. 산업구조 전환의 타당성에 대하여 그리고 자원순환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다른 연구물에 의존한다.<sup>3)</sup>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문헌등을 통하여 현행 법제가 내포하고 있는 해석과 법집행상의 문제점등을 도출하고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참고하여 우리 입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비교법 연구에서는 순환사회와 자원순환에 선도적인 입법활동을 펴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법제를 살핀다. 순환자원과 폐기물 관리의 체계와 개념 분석 등에 필요한 경우에 미국·독일 등의 입법례와 학설을 원용한다.

---

3)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내의 자원순환 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004.12) ; 한기주, 『재제조 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구원 : 2004.11)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속가능 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004.6)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요약집 (산업자원부 : 2003)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제1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 (사단법인 자원순환연대 : 2001.3) 등을 참조. 해양투기 폐기물에 관하여서는, 전재경, 『해양투기 폐기물의 매체간 통합관리 및 절차적정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6), 참조



## 제 2 장 현행법제의 구조와 과제

### 1. 연관분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와 자원순환에 관한 현행 법률들은 그 정합성의 수준이 문제되더라도 개념논리상 하나의 법제(legal system) 안에서 서로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법률들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처럼 각자의 존재와 그 변경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산업구조와 자원순환의 관계가 그렇고 산업구조와 국가표준(KS) 및 산업표준의 관계가 또한 그렇다. 여기에서는 서로 내적 연관성이 높은 법률들의 계통을 세우고 주요 법률들 상호간의 연관성을 제시하여 법제정비의 범주를 정립하고자 한다.

#### (1) 개 관

순환사회 형성과 관련된 현행법제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순환사회 형성촉진 부문이다. 산업구조의 전환 부문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등으로 구성된다. 자원순환의 촉진 부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축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이 있다. 관련 법률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해양환경관리법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 (2) 산업구조-자원순환의 연관성

앞에서 언급한 관련 법률들은 산업구조와 자원순환으로 준별되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 과정에서 서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영향을 미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 총 칙

제 2 조 (정의)

-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시설
- 재활용산업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7 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 8 조 (자원의 절약)

### ■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제1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제17조 (재활용의무량)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1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 (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 재활용산업의 육성

제31조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재활용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 보 칙

제37조 (관계기관의 협조)

### (3) 산업구조-국가표준의 연관성

지식경제부 관할에 속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산업표준’(제3조제9호)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서비스 향상, 생산효율 및 생산기술의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8조제1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정하고 있는 청정생산을 포함한 산업환경실천과제(제4조)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기본계획(제7조)과 산업표준화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표준기본법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비 시에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총 칙

제 3 조 (정의)

- 산업표준
- 표준물질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제 7 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 8 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 (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제22조 (제품인증)

제24조 (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 시스템 인증)

#### (4) 산업구조-산업표준의 연관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종합시책’(제3조)은 산업표준화법의 산업표준화기본계획(제2조의2) 및 한국산업규격(제10조)의 취지와 방침에 따라 수립·운용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경영의 일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경영체제의 인증등(제16조)은 산업표준화법상의 제품의 규격표시의 인증(제11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인증(제12조) 그리고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제16조)등과 별개로 운용되기 어렵다.

국가표준기본법(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산업표준화법은 산업 표준을 통일하고 단순화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력을 지닌다. 산업 표준화법이 규정하는 “광공업품”의 종류·형장·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제2조제1호)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정하는 청정생산의 계획 단계와 관련되고,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제2조제2호)은 청정생산의 이행단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장·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제2조제3호)은 청정생산물의 유통단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비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산업표준화법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제 2 조 (정의)

- 산업표준화
- 산업표준

#### 제 2 조의2 (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

#### 제10조 (한국산업규격)

#### 제10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등)

#### 제10조의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 제16조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 제18조 (인증심사)

#### 제26조 (인증의 취소)

#### 제27조 (청문등)

#### 제28조 (단체표준의 제정등)

제29조 (한국표준협회)

제32조 (규격준수)

제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 2. 산업구조 전환 부문

순환사회의 형성에 관한 법제 중 “상류”(up-stream)에 해당하는 법제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있다. 지식경제부가 정부입법을 관할하는 이 법률들은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고 제품의 설계와 품질을 표준화·규격화시켜 환경부가 관할하는 하류(down-stream)에서의 자원순환을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법률들은 “산업구조” 전체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킬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아니지만, “제품과 물질의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모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전환”과 관련을 맺는다. 여기에서는 이 법률들의 입법 연혁과 구조 및 과제를 살핀다.

###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1) 법의 제정과 변천

##### ① 1995년의 제정법

정부는 1995년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5085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국제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Rio)에서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

개발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 중인 환경경영 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 조성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종래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산공정개선, 청정생산기술개발, 환경경영인증, 환경설비산업 육성등의 내용이 포함된 5개년 종합시책을 수립할 책무를 부담하였다(제3조).

1995년의 제정법은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료조달·생산·유통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고(제4조), 종합시책과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개선, 설비대체 및 신·증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제5조),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제6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7조), 환경설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조).

나아가 1995년의 제정법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경영활동을 행하도록 하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실시등 환경경영인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제18조),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5조).

② 2002년의 개정법

2002년의 개정법은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시책들을 보강하였다.

정부는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며,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여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제15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가 종전의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사업을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민간법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인증사업을 한다(제16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및 산업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기업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7조).

종전에는 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원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원자격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경영체제가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거 규정(제22조)이 삭제되었다.



### ③ 2005년의 개정법

2005년의 개정법은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내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생태산업단지내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조의2).

정부는 기업 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사·분석·진단·상담 등의 역무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6조의2).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9조의2).

## 2) 법적과제

### ① 목 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이라 한다] 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목적은 국제환경법상의 명제임에 틀림없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여기에서는 수식어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② 정 의

□청정생산기술(제2조제1호)

2008년의 개정법은 “청정생산기술”을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한다(제2조제1호). “청정생산기술”은, 넓은 의미로 새기면, 제품설계·생산·수송·사용·재자원화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는 기술적 측면에서 청정생산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종래 청정생산기술은 “생산공정에서의…기술”로 집약되었으나 지속가능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서는 청정생산기술의 개념이 제품의 설계 단계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환경설비(제2조제2호)

환경법에 의하면,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제2조제2호). 그러나 “환경설비”(제2조제2호)라는 용어는 다의적이다.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환경설비”를 청정생산기술에 맞추어 “청정생산설비”로 바꾸고 이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감축하는 기기 및 장치”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에 호응하여 “지속가능제품”이라는 개념의 안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제품”이라 함은 “제품개발단계에서 경제적 가치, 환경에 대한 배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설계한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은 재활용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재제조제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재제조

“재제조”라 함은 사용후 제품 또는 부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수리, 조립의 단계를 거쳐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 갖도록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말한다. 2008년의 개정법은 “재제조(再製造)”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제2조제3호).

다만, 이러한 개념정의는 ‘재제조’의 독자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여하에 따라 개념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 재활용법에서는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다음 단계에 ‘재제조’를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재제조는 ‘재상품화’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활용의 범주를 벗어난다. 따라서 재제조의 대상을 재활용법상의 ‘재활용가능자원’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재활용법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이란, “순환자원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하되 재제조 (또는 재상품화)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맥락에서 “재제조”[또는 재상품화]라 함은 “순환자원 또는 폐기물로 된 기계·기기·가구·제조물·건조물 등의 부품 또는 재료를 분리하여 완제품 생산용 부품 또는 재료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되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제조[재상품화]와 재활용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재활용법 내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제조[재상품화]와 재활용의 조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즉,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순환자원의 재활용 또는 재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사용업종, 재생이용업종 및 재상품화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재사용제품, 재생이용제품 및 재상품화제품의 판단기준과 표시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법에 의한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활용과 재상품화의 관할이 중첩되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할을 정하여야 한다.

#### □환경경영체제

환경경영체제는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지향한다. 환경경영은 변화된 환경요인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즉, “환경경영체제”는 기업 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2008년의 개정법은 “환경경영체제”를 “기업 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로 규정한다(제2조제7호).

#### □환경경영체제인증

2008년의 개정법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기업 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로 정의한다(제2조제8호). 환경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등이 환경경영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2004년 11월의 개정에 따른 ISO 14001은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보증능력 및 신뢰성”을 “국제기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 □국제기준

환경경영체제인증에 사용되는 “국제기준”에 관한 개념 수정이 필요하다. 종전의 법률은 이에 관한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2008년의 개정법은 이러한 흠결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으로 정의한다(제2조제9호).

#### □ 생태산업단지

종래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라 함은 단지 내 기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부산물 및 폐기물을 재자원화함으로써 폐기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종전의 법률은 생태산업 단지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생태산업단지를 지정·육성·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입지와 건축 등에 관한 절차규정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절차규정들을 들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정의하고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환친법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의 개정법은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한다(제2조제6호).

### ③ 종합시책등

#### □ 재제조 대상등

자원·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전환 촉진 등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재

제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먼저 재제조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또는 그 부품 등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8조의2제1항). 품질인증(제10조)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제2항).

재제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품 및 부품의 재제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포함될 내용으로서는 재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재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자금융자와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의 제공, 재제조제품에 대한 인증·보증체계의 구축, 재제조산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해외투자의 유치와 수출상품화의 촉진 등이 있다.

#### □재제조 제품의 표시등

환친법에서는 재제조 제품의 표시에 관한 원칙과 그 남용을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제10조)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제8조의3제1항).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제2항).

재제조를 위한 사용후 제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론상으로는 품질인증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 생산시점에서 재제조에 이용된 제품과 독립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물론 입법기술상 재제조 제품의 독자성은 환чин법보다 특허법제에서 규율함이 바람직스럽다.

#### ④ 기술개발등의 지원

##### □ 컨설팅사업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환경경영을 도입·활용하는 기업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촉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002년 WSSD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 대한 환경경영자문, 공정진단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저감하는 전문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 청정생산 진단지도, 환경경영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전담 기업은 약 10여개에 불과하다. 중국,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국내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산업환경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업 육성으로 고용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환경서비스산업을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로 나누어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은 오염물질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후처리는 수처리용역, 폐기물관리, 환경측정·분석 등을 말한다. 아울러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근거를 마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전예방 환경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환경서비스기업지정, 환경경영컨설팅, 기술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후처리분야 환경서비스산업 육성은 환경부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의 개정법은 환경경영 컨설팅 및 청정생산기술 컨설팅 사업을 새로 도입하였다. 정부는 기업 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직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그 밖에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6조의2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직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그 밖에 청정생산기술 컨설팅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6조의2제2항). 컨설팅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제6조의2제3항).

#### □재제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8조의4).

#### □재제조 자금지원

재제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8조의5).



## ⑤ 국제협력·품질인증등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에 종합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체를 환경규제 대응 민간기구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U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분야의 제품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sup>4)</sup>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제품규제시행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제 환경규제는 국내 산업계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과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산발적인 대응과 총괄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중장기적인 산업계의 대응전략이 없었다.

2008년의 개정법은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생산 및 수출에 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였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9조의2).

## □품질인증등

1999년부터 기술표준원에서 기술표준원고시로서 인증(GR)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술표준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고시로 인증업무를 실시한다.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에도 이러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 여기에서 “환경규제”라 함은 WEEK(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비율 의무화)·ELV(자동차 재활용 의무부과)·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의무화)를 말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제4항).

#### □ 민간추진본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민간추진 본부의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2008년의 개정법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추진본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그리고 외국 관련 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생태산업단지로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태산업단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생태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생태산업단지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안출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접근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생태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태산업단지의 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생태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종래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경합적으로 생태산업단지의 개념화 또는 시범사업등을 추진하였다.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2005년~2009년[제1단계]에 5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2010년~2014년[제2단계]에 자원순환형 청정생산 Network를 확산시키고 2015년~2019년[제3단계]에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완성한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은 기반으로 재활용법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순환사회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재활

용단지'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연구하였다. 재  
활용단지는 개념상 생태산업단지와 부분적으로 겹친다.

2008년의 개정법은 생태산업단지를 구체화시켰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  
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제4조의2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생태  
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제2항).

나아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  
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제4  
조의2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  
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  
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의제4항).

####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2003년 9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총  
회에서 인정기관이 심사원 자격인증[등록]과 같은 직접적인 적합성평  
가 서비스[인증] 제공은 부적합 것으로 의결되었다. ISO인증의 민간이  
양(2002년 7월)으로 국내 인증시장의 급격한 확대 등에 따른 부실인증

논란으로 인증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인증기관의 경우 관리 시스템 미흡으로 인증 실태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2008년의 개정법은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국내인증기관]나 국제인증기관 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국내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국내인증기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인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6조제3항). 국내인증기관은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내인증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16조제4항). 국내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제5항). 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제6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인증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6조제7항).

#### □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과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실태

조사,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6조의2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을 수행할 때에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6조의2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16조의2제3항).

□관리대행자의 지정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관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6조의3).

⑥ 제 재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환친법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지원센터, 전문연구기관,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일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특히 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7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환친법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해당 인정기관이 부실인증을 반복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정기관의 인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7조제2항).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적법절차(due process)가 필요하다.

#### □벌칙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제2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품질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여야 한다(제30조). 이 법에서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형태의 행정형벌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방식들을 원용하여 형사범죄를 비범죄화할 것이 요청된다.

#### □과태료

2008년의 개정법은 과태료 제도를 강화하였다. 환경경영체제의 인정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과 관련하여 내린 시정명령을 국내인정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제32조). 민사벌칙금을 넘어 자율관리와 불이익을 연계시키는 방식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1) 2004년의 제정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

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재활용 부문에서 나타나는 불법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파촉진 부문에서 나타나는 불법화 현상에 해당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제2호).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중·장기목표, 기반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시행계획 수립·추진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중점기술개발분야 및 기술개발분야별 중점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개발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제4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대상지역 및 차종별 보급물량 등이 포함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제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산업자원부장관은 위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

□연료생산자 및 자동차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

2) 개발 및 보급의 촉진

□법정요건의 강화

2008년의 개정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법정요건을 강화시켰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제2호).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제3호).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제4호).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

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제5호).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제6호).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제7호).

#### □개발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조제1항). 기본계획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조제4항).

#### □개발시행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개발시행계획에는 중점기술개발분야, 기술개발분야별 중점추진목표, 기

술개발추진일정 및 방법,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제4조제2항).

#### □보급시행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진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맡겨져 있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보급시행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대상지역,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조제2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

#### □지원시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추진에 관한 법률』은 법정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지원시책들을 마련하였다.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제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제7조),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제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제10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제11조)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제12조)가 그것이다. 아울러 동법은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조항을 두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법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3조).

### (3) 표준화

#### 1)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은 산업표준화법을 지도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영향을 미친다. 1999년에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법률 5930호)은 국가표준(KS)<sup>5)</sup> 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정보사회화로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의 법은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 등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표준심의회를 두고(제5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 2) 산업표준화법

##### □입법연혁

1961년의 공업표준화법(제정 1961.9.30 법률 제732호)은 국내공산품의 표준규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광공업품의 품질향상 및 품위보장과

5)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1999년의 법 제3조제1호).

아울러 공업체계의 단순·전문화를 기하며 물품용어 및 규격을 통일하고 번호화하여 사무를 간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하여 생산가격의 저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공업체계의 수립을 도모하였다. 1992년의 산업표준화법(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은 1961년의 공업표준화법을 승계하면서 법의 명칭을 바꾸는 한편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첨단기술분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의 범위를 확립하고, KS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종전 규정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였다.

#### □표준개발 협력기관

2007년의 산업표준화법(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은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종래 산업표준의 제·개정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표준화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7년의 법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표준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제3항).

#### □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종래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가공기술만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하였다. 2007년의 법은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제16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단체표준

한국산업표준(KS)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히 기술변화가 급격한 분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체표준제도를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2007년의 법은 단체표준의 제정 목적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7조).

#### □산업표준화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2008년의 법 제2조제1호). “산업표준화”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2호).

## 3)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입법연혁

2000년에 전문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법률 제6315호)은 1967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제정 1967.3.30 법률 제1934호)와 그 대체입법인 1993년 품질경영촉진법(전문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을 승계한다. 2000년의 전문개정법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제도를 종전에는 정부주도로 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해방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등 공산품의 안전검사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간화

2000년의 개정법은 기업 등의 품질경영 개선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련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및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에 관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제4조 및 제5조). 아울러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기업 등의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관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을 관장한다(제7조).

### □ 표시권고 및 시정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 품질표시기준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품질표시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8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다(제15조).

### □ 품질과 경영의 관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품질경영과<sup>6)</sup> 공산품안전관리의 확보를 핵심기능으로 설정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국제기준(제2조제3호)에<sup>7)</sup> 따라 공산품(제2조제5호)의<sup>8)</sup>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광공업” 제품의 표준화를 규율하는 표준화 법제와 연계되며, 제품의 “품질”은 궁극적으로 상류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와 생산에 의하여 확보되고 하류에서 자순순환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내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품질경영”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제3조)

- 
- 6) “품질경영”이라 함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 7)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 8) “공산품”이라 함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을 말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등에서 “제품의 환경성과 그 인증”을 품질“경영”체제<sup>9)</sup> 또는 경영“자원”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즉 경영과 품질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불완전함으로써, 관련 법률간 정합성의 확보에 한계를 보인다.

### 3. 자원순환 촉진 부문

“순환사회”는 자원이 절약되고 물질의 순환이 용이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다. 종래 “하류”(down-stream) 부문에서의 자원순환과 관련된 현행 법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이 있다. 자원순환 체계상 소비후의 자원이나 물질은 “상류”(up-stream) 즉 생산 부문으로 회귀된다는 관점에서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률들은 앞에서 살펴본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된 법률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자원순환 촉진 부문의 법률들은 “폐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선도적 법률로서 법제의 핵심을 이루지만, “순환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심을 이룬다. 입법 연혁상 후자는 전자에서 과생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법률들의 입법 연혁과 구조 및 과제를 살핀다.

9) “품질경영체제”라 함은 기업 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 법의 제정과 변천

#### ① 1992년의 제정법

1986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3904호)에서 廢棄物 再活用に 관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분화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1992.12.8 법률 제4538호)은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의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92년의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제4조 내지 제6조),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제7조). 환경처장관과 주무부장은 자원재활용에 관련된 업종이나 제품의 분야별로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침을 통합하여 고시하였고, 재활용관련사업자는 그 지침을 준수할 책무를 부담하였다(제9조).

1992년의 법은 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및 원천적인 발생억제를 위하여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상의 예치금 제도외에 부담금제도(제19조)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수권하였다(제3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제25조)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하고(제26

조), 연구·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며(제29조),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제30조)을 추진하고 품질·규격기준(제31조)을 제정하도록 명하였다.

## ② 2002년의 개정법

2002년의 개정법은<sup>10)</sup>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함을 목표로 삼았다. 개정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종전 법률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위반자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9조·제10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2조).<sup>11)</sup>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4조).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2.2.4 법률 제6653호]

11) 법 제12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948호)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제12조제1항).

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6조 내지 제19조).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2조).

환경부장관과 재활용제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32조).

### ③ 2003년의 개정법

종래 폐기물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었던 바, 2003년의 개정법(법률 제7021호)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켜<sup>12)</sup>,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하고자 하였다(법 제7조제4항).

### ④ 2008년의 개정법

2008년의 개정법은<sup>13)</sup>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

12) 2003년의 개정법은 법 제7조제4항 중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48호:시행일 2009.3.22]

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향상,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 전(前)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살핀다.

####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

종전의 법률은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목적조항 등에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재활용정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럽연합 등 선진 국제사회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3R[발생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체계에 입각한 재활용정책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8년의 개정법은 자원순환의 개념을 정립하고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가공·수입·판매 또는 소비하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등으로 순환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 2).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 및 재활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자원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 1회용품 무상제공 예외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0조 본문), 2008년의 개정법은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법 제10조 단서).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최근 신도시건설·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재활용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청되었다. 이에 2008년의 개정법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계획수립 및 설계를 할 경우에 자원순환이 용이한 구조와 자재를 선택하게 유도하는 등 정부로 하여금 자원순환 촉진대책을 강구하도록 명하였다(법 제11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불박이식의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법 제11조제2항).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폐기물의 재활용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부품 등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미흡하여 이를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의 개정법에 따라,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 또는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15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게 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더

속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8년의 개정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前)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수권하였다(법 제34조의5).

####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자원순환에 관한 국민들의 지식·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식·정보에 대한 전달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전달체계의 마련이 요청된다. 2008년의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권하였다(법 제34조의7).

## 2) 법적과제

### ① 생산자책임

종래 자원순환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생산자책임’(producer liability) 제도는 1992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작되고 2002년의 동법 개정법(전문개정)에 의하여 강화되었다.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를 최초로 규정한 1992년의 제정법 제15조 또는 제조자 등에 대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강화한 2002년의 개정법 제9조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부문에 생산자책임 제도를 접목시켰다.<sup>14)</sup>

발생억제(reduce) 부문과 마찬가지로 재활용(recycle) 부문도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2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

14) 이 글에서 언급하는 폐기물 관리 또는 자원순환 체계는 “발생억제”(Reduce),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3R’ 시책을 기조로 한다.

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6조 내지 제19조).

## ② 자원순환 체계

종래의 법제는 자원순환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목적조항 등에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재활용 정책만을 규정하였다. 2008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은 “자원순환”의 개념을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그러나 이 개념에 따르더라도 “자원순환”은 여전히 순환자원 대신에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이용·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예컨대, 2007년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한다”(제1조)는 목적을 표방한다.

2008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제2조의2)을 정립하였다 :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를<sup>15)</sup> 하는 자는 폐기물의

15) 이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제1항). 발생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제2항제1호).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제2호).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제2항제3호). 이 기본원칙은 자원순환 체계가 “폐기물”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최종처리

최종 처리단계에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前)처리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의 개정법(제34조의5)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시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최종처리”라는 도식은 폐기물 속에서 순환자원을 분리해 내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순환자원”의 개념의 독자성을 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2) 폐기물관리법

### 1) 연 혁

1986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3904호, 1987.4.1 시행)은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폐기물관리 부문을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성립되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현행법제의 구조와 과제

1991년의 전부개정(법률 제4363호, 1991.9.9 시행)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분야를 삭제하고,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는 한편,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특정제품·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 예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 4월의 개정법(법률 제8371호, 2007.4.11 일 시행)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목적으로 정비되었다. 2007년 8월의 개정법(법률 제8613호, 2008.8.4일 시행)은 폐기물의 전자인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 2) 특 징

폐기물관리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에서 기본법의 위치에 있다. 이 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파생되었다. 폐기물 관련하여서는 이 법 이외에도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바젤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한다.

### 3) 조문체계(7개장 68개조로 구성)

구 분	구 성 내 용
제 1 장 총칙 (제 1 조~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li> <li>○ 폐기물의 광역관리,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li> <li>○ 국민의 책무, 폐기물의 투기금지</li> <li>○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관리종합계획</li> <li>○ 폐기물통계조사, 폐기물공정시험방법</li> </ul>
제 2 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처리기준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등</li> <li>○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협약의 체결</li> </ul>

구 분	구 성 내 용
(제13조~제18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 3 장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제19조~제24조)	○ 기본적 처리증명, 강화된 처리증명 ○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 처리증명의 완화,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
제 4 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5조~제33조)	○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허가의 취소, 과징금 처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관리 ○ 허가·신고의 의제, 권리·의무의 승계
제 5 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34조~제44조)	○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 장부 등의 기록·보존, 휴업·폐업의 신고, 보고 서제출, ○ 보고·검사등,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조합의 사업, 분담금, 민법의 준용
제 6 장 보칙 (제45조~제62조)	○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폐기물재활용신고 ○ 폐기물의 회수조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대집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등 ○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 제한 등 ○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국고보조등, 설치비용의 지원 ○ 폐기물처리실적보고, 허가등의 수수료, 행정처분 기준,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제 6 장 벌칙 (제63조~제68조)	○ 벌칙, 과태료

#### 4) 폐기물 행정의 투명화

종전에는 폐기물의 배출·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의 개정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13호)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

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 증명을 투명화·간소화하고,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시 인계·인수절차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하면 되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된다(제18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

지금까지는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경우에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등의 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는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수출입 및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수출입에 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수출할 수 없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이는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통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을 줄이고 수입폐기물에 대한 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 ③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단계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사항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사항으로 규정하였다(제25조제2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

종전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두어 재량행위의 범위가 불투명하였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때,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로 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축소시켰다(제27조).

⑤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

종전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더라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재활용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없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의 폐쇄, 재활용사업의 정지 또는 재활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제46조제7항).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연 혁

2003년의 제정법(법률 제7043호, 2005.1.1 시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처리,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재활용 기준 등을 분리하여 단일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다.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 □2005년의 개정법

2005년의 개정법(법률 제7782호)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이외에 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되 분담이행방식은 폐지하며,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에 대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 □2006년의 개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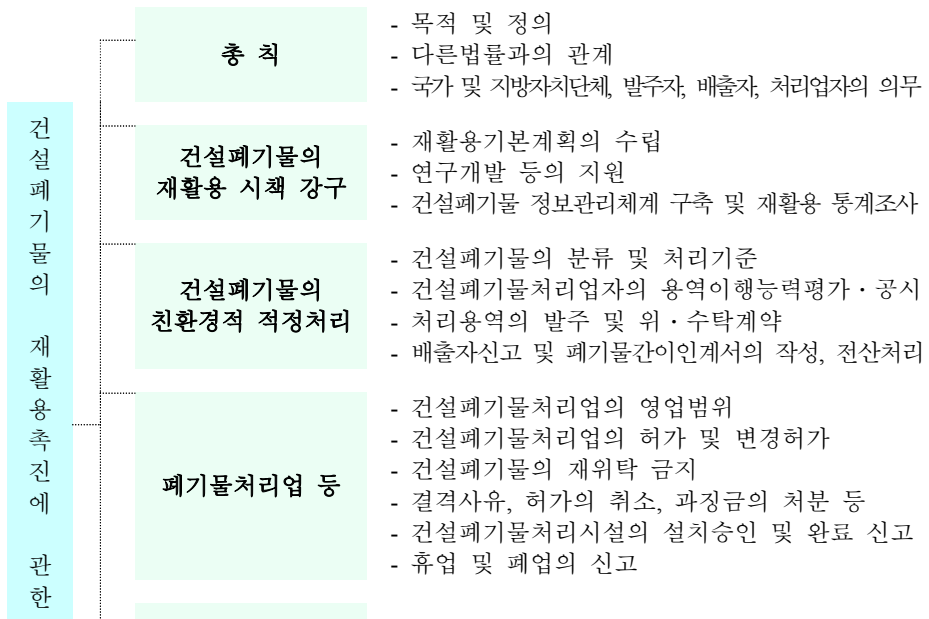
2006년의 개정법(법률 제8115호)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 능력은 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중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폐지하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업체의 평가기준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을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2) 목적 및 특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건설폐기물 관련 규정을 종합화·체계화시켰다. 이 법은 또 천연골재의 대체제로서 순환골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순환골재 사용의무 등 각종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3) 조문체계(9개장 66개조로 구성)





법 률	<b>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등</li> <li>- 품질인증의 취소 및 결격사유</li> <li>- 사용의무,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li> <li>-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li> </ul>
	<b>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조치 및 처리이행보증, 처리</li> <li>- 책임승계 및 승계자에 대한 조치</li> <li>-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li> </ul>
	<b>공제조합 등의 설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조합 및 협회의 설립</li> <li>- 사업 및 공제규정</li> <li>- 신용에 의한 보증, 용역이행상황조사</li> <li>- 보고서제출 및 다른 법률의 적용</li> </ul>
	<b>보칙 및 벌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문 및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li> <li>- 수수료, 행정처분의 기준</li> <li>- 벌칙 및 양벌규정, 과태료</li> </ul>

####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 1) 2007년의 제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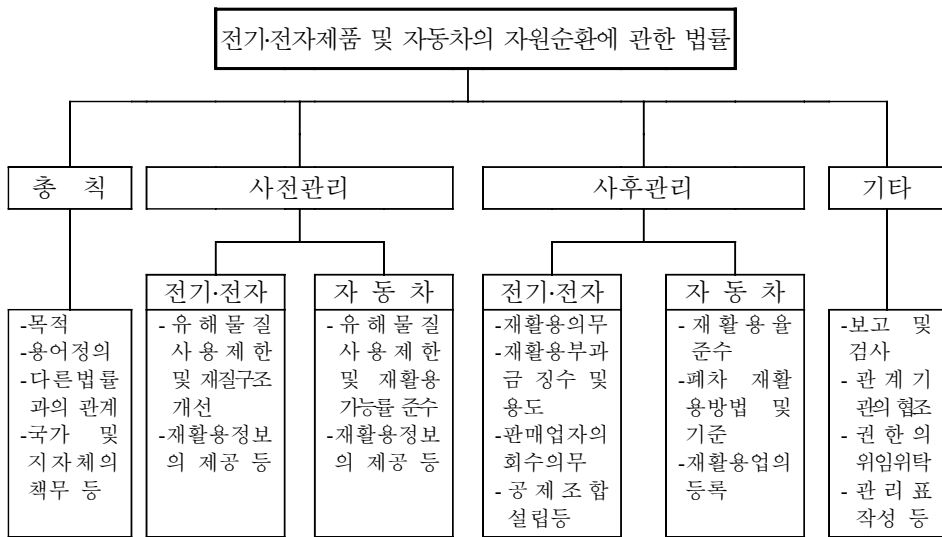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8405호 : 2008.1.1 시행)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2) 특 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던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의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관받았다. 이 법은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법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법 제12조),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등(법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법 제25조 및 제26조) 및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을 주요 시책으로 한다.

### 3) 법체계(6개장 46개조로 구성)



### 4) 입법요지

#### ①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과 복합재질이 사용됨에 따라 재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단일재질의 사용 등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

게 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2008년의 제정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가능물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환경유해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평가하게 된다.

#### ②재활용정보 제공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2008년의 제정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용사업자가 그에 맞추어 재활용하도록 연계시켰다(법 제12조).

#### ③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

2008년의 제정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이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하였다(법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④사업자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관한 이행당사자의 역할이 그 동안 불명확하였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행당사자들 간의 협조를 통한 재활용이 어려웠다. 2008년의 제정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 재활용업

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5조 및 제26조).

⑤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

기후·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과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은 분리·보관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이 어려워 폐자동차에 함유된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인 프레온 가스와 폐자동차를 파쇄한 후 남은 중금속을 함유한 파쇄 잔재물을 분리·보관하고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008년의 제정법은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도록 명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도록 하며, 그 처리·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7조 및 제28조).

### (5)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sup>16)</sup> 국가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함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

16) 제정 2007.1.19

① 해양환경의 종합관리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 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제1조 및 제14조).

②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제12조 및 제13조).

③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총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한다(제17조).

④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국토해양부장관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제39조).

⑤ 유해한 防汚塗料 등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 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제40조).

⑥ 국가긴급방제계획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제61조 및 제62조).

⑦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한다(제84조).

⑧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 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한다(제96조 내지 제109조).

⑨ 출입검사권

중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한다(제115조).

## 제 3 장 외국법제분석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실천목표로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촉진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들은 제정하였다. 독일이 그렇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이 그렇다. 독일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에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환경과 조화하는 폐기물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2008년 8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2009.1.1 시행)을 제정하여 기본관리제도 아래 감량화·재이용·자원화를 지향하고 관련 주체들의 법률책임을 구체화시켰다.<sup>17)</sup> 여기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영국을 택하여 그 법제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관련 입법과 법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본을 택하여 그 법제를 분석한다.

### 1. 영국법제 분석

영국은 1995년의 환경법(the Environment Act)을 제정하면서, 1990년의 환경보호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개정하여 국가폐기물전략의 실정법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영국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EC의 폐기물지침(directive)의 국내적 이행을 주요 입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다.<sup>18)</sup>

17) 中國의 순환경제촉진법의 제정과정과 내용에 관하여서는 저우커(周珂), “중국의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에 대한 경과와 동향”,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및 한국폐기물학회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움 『자원순환경제 사회와 지속가능한 지구』 (송도컨벤시아 : 2008.11.13), 143~154쪽, 참조

18) 1995년의 英國 환경법 조항(제44A조·제44B조)은 1975년 7월 15일자 유럽공동체 의회 폐기물 지침(75/442/EEC) 제7조를 이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1) 국가폐기물전략

영국의 국가폐기물전략(National Waste Strategy) 및 보고서는 1995년의 환경법(the Environment Act)에 근거하여 작성·개정된다. 1995년의 환경법(제92조)은 1990년의 환경보호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국가폐기물전략 근거 규정인 제44A조(잉글랜드·웨일즈지역 적용규정)와 제44B조(스코틀랜드지역 적용규정)를 증보하였다. 영국은 4개의 지역(country)으로 나뉘어져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보호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되는 국가폐기물전략 규정(제44A조)을 두는 외에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는 규정(제44B조)을 따로 둔다.

국가폐기물전략 관련 영국의 제정법은, 다른 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EC지침의 실행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1995년의 환경법 조항(제44A조·제44B조)은 1975년 7월 15일자 유럽공동체 의회 폐기물 지침(75/442/EEC)<sup>19)</sup> 제7조를 이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EC 폐기물 지침(75/442/EEC)은 1991년 3월 18일자 지침(91/156/EEC)에 의하여 1차로 개정되었고, 1991년 12월 23일자 지침(91/692/EEC)에 의하여 환경에 관한 특정한 지침들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들을 표준화·합리화시키기 위하여 2차로 개정되었다.<sup>20)</sup>

---

19) 유럽연합(EU)에서 폐기물 처리·처분의 기반이 되는 것은 『폐기물에 관한 1975. 7.15 이사회지침 75/442/EEC』이다.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폐기물지침’이라 지칭된다. 폐기물지침은 1991. 3. 18 이사회지침 (91/156/EEC)에서 개정되었고, 개정 폐기물지침은 이하의 『폐기물정책에 관한 1990년 5월 7일의 이사회결의 90/C/122/02』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폐기물지침은 유럽연합에서 폐기물관리의 효율화를 제고시킨다. 여기서는 폐기물처리·처분에 관한 공통용어와 폐기물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도 강구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폐기물목록(EWC)이 작성되었다.

20) Section 44A (10), the Environment Act 1995(c.25), U.K.

## 1) 전략보고서의 작성의무자

주무장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폐기물의 회복과 처리에 관한 그의 정책을 담은 (“전략”)<sup>21)</sup>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44A조제1항). 폐기물 회복·처리 전략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관한 보고서 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이에 그들 전체에 관한 복수의 보고서로 구성되거나 동종의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44A조제2항). 주무장관은 전략보고서를<sup>22)</sup>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법 제44A조제3항).

## 2) 전략보고서의 수록내용

국가전략은 그에 담길 수 있는 사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이 법의 별표2A에 기술된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한 주무장관의 정책들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고(법 제44A조제4항제a호), 회복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의 양태, 분량 및 기원(origin), 일반적 기술요건 및 특수한 폐기물들에 관한 특별한 요건들의 각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44A조제4항제b호).

## 3) 환경청·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

주무장관은 전략보고서의 작성 또는 그 변경에 있어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과 협의하여야 하고(법 제44A조제5항제a호), 그가 판단하기에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 또는 사람들 및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 또는 사람들과 협의하여야 하며(법 제44A조제5항제b호), 필요한 경우에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구 또는 사람들과 협의할 수 있다(법 제44A조제5항제c호).

21) 이 조항에서 “전략”(strategy)이라 함은 수시로 개정된 전략을 포함한다(법 제44A조 제9항).

22) 이 조항에서 “보고서”(statement)라 함은 전략에 따라 수시로 개정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법 제44A조제9항).

#### 4) 환경청에 대한 조언·정보의 요구

주무장관은 1995년의 환경법(the Environment Act) 제40조에 의하여 부여된 지침발령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환경청에 대하여 국가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들에 관하여 그에게 조언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를 발할 수 있고(법 제44A조제6항제a호) ; 환경청이 보기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의 종류나 양에 관하여, 환경청이 보기에 이러한 폐기물의 회복 또는 처리를 위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용할 수 있거나 필요한 설비들에 관하여, 또 주무장관이 국가전략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를 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결과를 그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를 발할 수 있다(법 제44A조제6항제b호).

#### 5) 행정지시 및 협의의 구체화

법(제44A조제6항제b호)에 따른 주무장관의 지시는 조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지역을 특정하거나 기술하여야 하고(법 제44A조제7항제a호), 해당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에 관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이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을 둘 수 있다(법 제44A조제7항제b호). 법(제44A조제6항제b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지시가 발하여질 경우에 환경청은, 그 지시의 요건을 지키면서, 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그가 판단하기에 지방계획 당국들의<sup>23)</sup> 대표에 해당하는 기구나 사람들과 협의하고 해당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나 사람들과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협의하

---

23) 이 조항에서 “지방계획당국”(local planning authority)이라 함은 1990년의 『도시 및 시골 계획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규정된 당국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법 제44A조제9항).

여야 하고(법 제44A조제8항제a호), 관계 당국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44A조제8항제b호).

## (2) 생산자책임

### 1) 입법권자

“생산자책임의무”(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는 해당 정령에 특정되거나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령의 적용을 받는 관련 집단이나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 취해지도록 요구되는 조치를 의미한다<sup>24</sup>. 주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은 제품이나 원료의 재사용(re-use)·자원회수(recovery)<sup>25</sup> 또는 재활용(recycling)을 촉진하거나 확보할 목적으로 법규로 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법규로 정하는 제품이나 원료에 관하여 생산자책임의무를 부과하는 정령(regulations)을 발할 수 있다(법 제93조제1항). 주무장관의 생산자책임 정령은 ‘제정법적 문서’(statutory instrument)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법 제93조제9항 내지 제12항,참조).

### 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정령을 제정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은 그가 보기에 그가 제안하는 정령에 의하여 자기의 이익이 영향을 받고 있거나 영향을 받을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 기구들 또는 사람들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행사할 수 있다(법 제93조제2항).

24) subsection(8) of Section 93, the Environment Act of 1995, U.K

25) “자원회수”(recovery)라 함은 제품이나 원료와 관련하여 제품이나 원료를 퇴비(compost)로 만들거나 생물학적 가공에 의하여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 또는, 수단과 관계 없이, 제품이나 원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을 포함한다. subsection(8) of Section 93, the Environment Act of 1995, U.K

### 3) 입법권의 행사시기

정령을 발할 권한은, 유럽공동체조약(the Community Treaties)에 따른 영국의 의무(a호) 또는 현재 영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약(b호)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장관이 법(제93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 후에 법(제93조제6항)에 규정된 요건사항들에 관하여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 제93조제3항).

### 4) 최소수준의 유지

법(제93조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권은 법(제93조제3항)에 규정된 EC조약(제a호) 또는 국제협약(제b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품이나 원료의 재사용·자원회수 또는 재활용의 (촉진이나 증진보다는) 최소 수준(at least a minimum level)을 유지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법 제93조제4항).

### 5) 현존 혜택의 유지

주무장관은 법(제93조제3항의 제a호나 제b호)에 따라 정령을 제정할 경우에 법 제93조제6항에 규정된 요건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하고, 법(제93조제4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품이나 원료의 재사용·자원회수 또는 재활용의 증가에 대한 언급은 당면한 제품이나 원료의 재사용·자원회수 또는 재활용의 최소수준을 유지함에 대한 언급으로 보고(a호), 환경적 또는 경제적 혜택의 창출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현존 혜택(existing benefits)의 최소 수준을 유지함에 대한 언급으로 보며(b호), 따라서 이러한 혜택의 확보나 달성에 대한 법(제93조 또는 제94조)에서의 언급은 이러한 현존 혜택들의 최소수준을 유지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93조제5항).

## 6) 비용편익의 분석 등

법(제9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제안된 입법권의 행사로 당면한 제품이나 원료의 재사용·자원회수 또는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a호), 이러한 증가가 환경적 또는 경제적 혜택을 낳을 것(b호), 환경적·경제적 혜택들이 새로운 생산자책임 의무의 부과로 초래될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할 것(c호), 정령에 의하여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들이 환경적·경제적 혜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d호) 그리고 제품이나 원료를 생산·가공·분배 또는 공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을 유지하면서(i) 또 새로운 생산자책임 의무가 부과되어야만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화가 추진되면서(ii) 기업의 부담들이 법정목표의<sup>26)</sup> 달성에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e호)을 요건으로 하되, 법(제93조제6항의 제e호제 i 호)의 어떠한 사항도 타인들을 배제하려는 집단이나 부류에 생산자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정령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법 제93조제6항).

## 7) 필요 최소한의 제한

주무장관은 정령을 제정할 권한의 행사가 경쟁을 제약하거나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효과를 빚지 아니하도록 분별하면서, 또 만약에 이러한 효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법(제93조제6항)에서 언급된 환경적·경제적 혜택들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으로(no greater than is necessary for) 입법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법 제93조제7항).

26) “법정목표”(relevant targets)라 함은 당면한 생산자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정령에서 특정되거나 기술된 목표를 의미한다. subsection(8) of Section 93, the Environment Act of 1995, U.K

### 8) 의회의 승인

주무장관이 제정하는 생산자책임 정령은 제정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법 제93조제9항), 그 초안(a draft of the instrument)은 하원(the House of Parliament)에 제출되어 결의(resolution)를 통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93조제10항). 다만 정령에 규정된 법정목표를 변경하는 제정법적 문서에 대하여서는 의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법 제93조제11항). 이러한 승인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제정법적 문서는 하원의 결의에 따라 무효로 된다(법 제93조제12항).

### 9) 생산자책임의 입법사항

1995년의 환경법(제94조)은 법(제93조)에 따라 생산자책임의무를 규율하는 정령이 답아야 할 입법사항들을 규정한다. 즉 생산자책임의무 정령은 법(제93조)의 보편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에 관하여 세부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다(법 제94조제1항).

- (a)인적 적용범위 : 정령의 적용을 받는 의무이행 집단이나 부류를 말한다.
- (b)물적 적용범위 : 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원료를 말한다.
- (c)법정목표 : 재사용·자원회수·재활용을 달성하여야 할 목표[비율]를 무게나 부피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 (d)부수조건 : 생산자책임의무는 구체적인 조건들(particulars)을 수반한다.
- (e)등 록 : 등록관련 규정은 생산자책임 의무자의 등록, 등록된 면제 체계(registered exemption scheme)의<sup>27)</sup>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등록, 등록 관련 요건, 등록 요건의 변경, 신청서의 작성, 등록기간 또는 등록무효를 포함한다.

---

27) “면제체계” (exemption scheme)라 함은 생산자책임의무 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생산자책임 의무를 준수할 요건을 구성원들에게 면제시켜주는 체계를 말한다. subsection(6) of Section 94, the Environment Act of 1995, U.K

- (f)등록의 면제 : 주무장관은 등록된 면제체계를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g)이행증명서 : 등록된 면제체계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의무이행 증명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
- (h)관계 기관의 승인 : 관계 기관은 이행증명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들의 행동을 승인한다.
- (j)면제체계의 등록 : 면제체계의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면제 조건을 설정·변경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 (k)면제요건의 충족 : 면제체계를 등록하기 전에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그리고 면제기준은 준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l)관계기관의 권한 : 면제체계의 등록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이 접수하는 신청서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권한을 표시한다.
- (m)면제체계 등록의 무효
- (n)경쟁심사 : 등록된 면제체계가 또는 관계 기관이 접수한 등록면제 신청서의 사례가 경쟁 제한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 (o)경쟁법의 적용<sup>28)</sup> : 면제체계와 관련하여 또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면제체계의 운영자에 해당하는 어떠한 합의·결정 또는 양해관행과 관련하여 1998년의 경쟁법(the Competition Act) 제1장의 관계 규정이 배제되었거나 변경되었는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 (p)수수료 : 관계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수수료 또는 그 결정 방법을 정한다.
- (q)이의신청 : 면제체계와 관련된 등록의 거절이나 등록조건의 부과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다.
- (r)이의신청절차

---

28) 법 제93조제1항제(o)호는 2000년의 개정법(제28조)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동항 제(oa)호는 1998년의 개정법 제3조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 (s) 사례공시 : 면제체계가 등록되거나 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나 그 유형들을 열거하거나 등록된 면제체계의 구성원으로 간주되거나 간주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 유형들을 열거한다. 이러한 열거는 해당 이의신청이 종결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지속한다. 해당 면제체계와 당사자의 지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 (t) 이행감시 : 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들이 이행되는가의 여부를 감시할 의무를 관계기관에 부과한다.
- (u) 당사자의 정보관리 : 당사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게 하거나 주무장관이나 관계 행정청에 답변서를 제공하게 한다.
- (w) 관계기관의 정보관리 :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된 면제체계와 관련된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 기록부를 보존하게 하거나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한다.
- (y) 출입·검사 권한 : 이 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의 행정청이<sup>29)</sup> 수행할 수 있는 출입 및 검사 권한을 규정한다.
- (ya) 정보 요청권 : 면제체계와 관련하여 또는 면제체계 운영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또는 이러한 운영자를 다루는 사람과 관련하여, 경쟁심사(competition scrutiny)를 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한다.

#### 10) 운영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주무장관이 판단하기에 등록된 면제체계의 운영자가 취할 조치가 유럽공동체 조약에 따라 영국에 부과된 의무와 양립될 수 없거나(i), 영국이 현재 당사국인 국제협약과 양립될 수 없을(ii) 때에는(a호) 또는 국제법상의 의무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면제체계 운영자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b호), 주무장관은 그 운영자에게

29) “제3의 행정청”(new Agency)이라 함은 환경청(the Agency)이나 SEPA를 말한다. subsection(6) of Section 94, the Environment Act of 1995, U.K

당면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법 제94조제2항).

### 11) 경쟁심사 관련 경과규정

생산자책임 의무 정령은 법 제94조제1항제(ya)호에 따라 경쟁심사를 목적으로 요청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94조제1항제(n)호 또는 제(ya)호에 따라 경쟁심사를 목적으로 심리가 진행 중인 합의 또는 면제 체계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법 제94A조제2항). 생산자책임 의무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 제93조의 제2항(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제3항(입법권의 행사시기), 제5항(현존혜택의 유지), 제6항(비용편익의 분석), 제7항(필요최소한의 제한) 및 제10항(의회의 승인)은 경쟁사항을 규율하는 법 제94조제1항제(n)호, 제(oa)호, 제(ya)호 또는 법 제94A조제2항(경과규정)에 따라 제정된 정령만을 담고 있는 제정법적 문서(stutory instrument)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94A조제3항).

## (3) 가정 폐기물 재활용법

### 1) 목 적

2003년의 영국 가정 폐기물 재활용법(the Household Waste Recycling Act)은<sup>30)</sup> 가정 폐기물의 수거와 퇴비화 및 재활용에 관한 개정법을 제정하여 1990년의 환경보호법(c.43) 제45조 다음에 제45A조·제45B조를 추가하고 1990년의 법 제47조 다음에 제47A조를 추가하였다.<sup>31)</sup> 잉글랜드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제45A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separate collection)에 관한 조치이고, 제45B조는 웨일즈의 폐

30) 30th October 2003, the Household Waste Recycling Act 2003(c.23), the U.K.

31) 영국의 가정폐기물 재활용법(the Household Waste Recycling Act 2003)은 비교적 간단하게 모두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동법 제4조는 스코틀랜드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고 동법 제5조는 발효일을 규정한다.

기물 수거 당국들에 대하여 권능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47A조는 재활용과 퇴비화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다.

## 2) 추진방법

잉글랜드 지방의 폐기물 수거당국은 “불합리하게 높은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에서”(a호) 가정 폐기물들을 수거하거나, “비교가 가능한” 대안적 조치(alternative arrangement)들을(b호) 구사하여야 한다(제45A조제2항). 재활용이 가능한 가정 폐기물들은 가정 쓰레기로부터 “따로 따로”(individually) 분리하거나 “혼합적으로”(together) 분리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수거조치를 의미한다(제45A조제3항). 법(제45A조제2항)에 규정된 “합리적 비용” 요건과 “대안과의 비교” 요건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법 제45A조제4항).

## (4) 폐기물 수집당국의 재활용계획

1990년의 영국 환경보호법[최근개정1999년]은 폐기물 수집당국(waste collection authority)으로 하여금 재활용(recycling)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재활용계획은 수집당국과 폐기물 처리계약자(disposal contractor)들 사이의 약정(arrangement)의 체결 또는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환경보호법은 이 재활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들을 두고 있다.

###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

폐기물 수집당국은 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에 관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리·봉합·포장 등 어떠한 약정(arrangement)이 적절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a호), 이

목적에 위하여 어떠한 약정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고(b호), 이러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다루는 당국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안된 약정보고서[계획]를 수립하고(c호), 이 계획(plan)의 변경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추가조사를 수행하고(d호), 이러한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당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의 변경을 추진할(e호) 의무가 있다(법 제49조제1항).

## 2) 쾌적효과/비용효과의 고려

수집당국은 제49조제1항제c호 또는 제e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 또는 그 변경을 고려함에 있어서 그 약정 또는 변경이 어떠한 지역의 쾌적함(amenity)에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수집당국에 발생하게 될 비용 또는 절감분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하여야 한다(법 제49조제2항).

## 3) 정보제공의무

수집당국은 특정기간 동안 수집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리대상(controlled) 폐기물의 종류와 양(a호),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b호), 특정기간 동안 제49조제1항제a호에 열거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c호), 폐기물처리계약자들과 맺을 것으로 예상하는 약정 또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폐기물처리당국들과 폐기물처리계약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약정을(d호), 수집당국이 이 법(제48조제6항 또는 제53조)에 따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설비와 시설을(e호) 그리고 그 계획에서 제공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견적비용 또는 절감분(f호)에 관한 정보를 을 재활용약정계획에 포함할 의무를 진다(법 제49조제3항).

#### 4) 계획초안의 송부

폐기물 수집당국[1999년의 개정법에 의하여 대런던의 폐기물수집 당국을 제외한다]은 재활용약정계획 또는 그 변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위의 제49조제3항이 준수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게끔 계획의 초안사본을 주무장관에게 보낼 의무를 지며 동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법 제49조제4항). 대런던의 경우에는 런던시장이 주무장관이다(법 제49조제4A항).

#### 5) 지역통지의무

폐기물 수집 당국은 폐기물 재활용 약정 계획을 또는 그 변경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국의 의견에 비추어 그 계획 또는 변경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절히 통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a항)를 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폐기물처리당국과 폐기물규제당국에 재활용 약정 계획이나 경우에 따라 특이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변경의 사본을 보낼 의무(b항)를 진다(법 제49조제5항).

#### 6) 열람 및 사본의 제공

폐기물수집당국은 재활용계획 또는 특이한 변경의 사본을 공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합리적인 모든 시간 동안 비치하고 당국이 정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그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법 제49조제6항).

#### 7) 이행기간의 특정

주무장관은 어떠한 폐기물수집당국[1999년의 개정법에 의하여 대런던의 폐기물수집당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을 특정하여 지시할 수 있고 폐기물수집당국은 이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49조제7항). 대런던 폐기물수집당국에 대하여서는 런던시장이 주무장관의 지시를 발할 수 있다(법 제49조제7A항).

## (5) 폐기물 및 배출권거래법

### 1) 목 적

2003년의 영국 폐기물 및 배출권거래법(Waste and Emissions Trading Act) 제1편은 1999년 4월 26일 채택되고 1999년 7월 16일에 발효된 「EC 매립지 지침」(Council Directive 1999/31/EC : the Landfill Directive)<sup>32)</sup>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들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또한 매립지에 보내는 생분해성 지방자치단체[地自體] 폐기물(biodegradable municipal waste)의 양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자체들에게 거래허용량(tradable allowances)을 도입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 폐기물전략 2000」<sup>33)</sup>백서의 시행을 완수하고자 한다.<sup>34)</sup>

### 2) 정 의

이 법에서 “생분해성 폐기물”(biodegradable waste)이라 함은 식료품과 정원 폐기물 및 종이류와 같이 혐기성(anaerobic) 또는 호기성(aerobic) 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1조제1항). 이 법에서 “생분해성 지자체 폐기물”(biodegradable municipal waste)이라 함은 생분해성 폐기물과 지자체 폐기물을 포함한다(법 제21조제2항). 이 법에서 “지자체 폐기물”(municipal waste)이라 함은 가정폐기물(waste from house

32) OJ L 182, 16.7.1999, p.1

33) Waste Strategy 2000 : England and Wales, Command Paper 4693

34) Explanatory Notes, Waste and Emissions Trading Act 2003, para. 4

olds) 또는 이와 비슷한 특성이나 성상을 지닌 그밖의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1조제3항).

### 3) 매립지지침

매립지지침(LD)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은 매립지로 보내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양을 감축하는 것이다. EU회원국들은 매립지로 갈 생물해성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을 설정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지침(LD) 제5조제2항에 열거된 (매립지로 갈) 생분해성 지자체 폐기물의 감축목표를 완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EU 회원국은 각각 매립지로 갈 생분해성 지자체 폐기물의 양을 2006년에는 1995년 수준의 75%까지, 2009년에는 50%까지 그리고 2016년에는 35%까지 감축하여야 한다. 1995년에 수집된 지자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매립지로 보낸 EU회원국들에 대하여서는 이 감축목표들이 4년씩 지연된다. 영국은 이 지연혜택을 받는다.<sup>35)</sup>

### 4) 매립허용량

법은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영국의 각 지역(country)으로부터 매립지로 보낼 수 있는 생분해성 지자체 폐기물의 최대량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매립지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법은 분배기관이 영국의 각 지역을 대상으로 분배하는 양을 기초로 생분해성 폐기물 처리당국이 매립지에 보낼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매립허용량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한다. 법은 또한 주무장관과 영국의 각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당국에 대하여 매립지로 갈 생분해성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이중구역제(two-tier areas)가 시행되는 잉글랜드에서 법은 폐기물처리당국에 대하여 폐기물수집당국에게 그들의 폐기물을 분리된 형태로 인도할 것을

---

35) *Ibid*, para. 5

지시할 권능을 부여한다. 법은 또한 이중구역제 관할 당국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지자체 폐기물 공동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sup>36)</sup>

### 5) 배출할당량의 거래

법 제2편은 배출할당량(emissions quotas)의 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법 제38조는 1999년의 오염예방 및 통제법(th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의 별표1을 개정한다. 오염예방 및 통제법의 한 가지 목적은 「EU 통합적 오염예방 및 통제지침」(Council Directive 96/61/EC)<sup>37)</sup>에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장차의 배출권거래 체계(emissions trading schemes)에 벌칙제도를 도입하였다. 법 제2편은 또한 제정법에 의하지 아니한(non-statutory) 현행 영국 배출권거래 체계에 정액 부담금(fixed financial penalties)을 포함하여 벌칙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sup>38)</sup> 배출권거래 체계에 관한 정책요강은 2001년 4월에 공표된 「배출권거래 체계의 골격」(the Framework fo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에<sup>39)</sup> 기술되어 있다.

## 2. 일본법제 분석

일본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순환형 경제시스템의 구축’에<sup>40)</sup>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 6월에 순환형 사회

36) *Ibid.*, para. 6

37) OJ L 257, 10.10.96, p.26

38) Explanatory Notes, Waste and Emissions Trading Act 2003, para. 7

39) Defra, August 2001, <http://www.defra.gov.uk/environment/climatechange/trading/index.htm>

40) 일본에서 “순환형 경제 시스템”이라 함은 환경규제와 자원제약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종래의 경제사회에 있어 용인되어온 사회적 인식이나 행동 준칙을 전환하여 환경규제와 자원제약에 대한 대응이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모든 면에서 빌트인(built-in)한 이른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http://www.meti.go.jp/policy/recycle/main/3r\\_policy/policy/outline.html](http://www.meti.go.jp/policy/recycle/main/3r_policy/policy/outline.html) 참조).



경제 구축의 이념과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개별분야에 있어 자원순환의 구체적인 노력과 과제를 규정한 리사이클(recycle) 관련법의 정비도 진행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환경정책의 중점이 종래의 공해대책의 정책에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순환형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순환형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본의 법제도 등을 검토하고 일본에서의 성과와 과제 등을 분석하여, 동일한 문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검토한다.

## (1) 순환형 사회경제 구축과 기본적 구조

### 1) 구축의 필요성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를 특징으로 하는 사용하고 버리는 사회경제활동은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가 증대하고 있다는 인식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연간 17.5억 톤의 자원이 자연으로부터 채취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재이용되고 있는 것은 불과 12.6%의 2.2억 톤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5.3억 톤의 대부분은 건설물이나 제품으로 일본국내에 축적되거나 에너지, 식료로써 소비되고 최종적으로는 폐기물로써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자원 흐름은 그 순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채취에서 폐기라는 자원의 흐름을 리사이클링(재자원화)의 추진 등으로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자원의 유효이용과 환경보전(환경파괴방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종래의 사회경제시스템의 흐름은 생산→유통→소비→폐기라는 일방향의 動脈 시스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여기서는 폐기→생산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靜脈 시스템의 흐름은 희박하였다. 이에 환경에 대한 부담증대, 최종폐기물처분장의 문제, 귀중한 자원의 고갈위기에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과제와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리사이클링 등으로 순환형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와 생산을 연결하는, 즉 동맥시스템의 흐름과 정맥시스템의 흐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sup>41)</sup>

구분	일 본	한 국
법률명칭	폐기물처리법	폐기물관리법
운영기관	- 자치단체로 일원화 · 중앙 : 환경성리싸이클대책부 (85명) · 지방 : 지방환경사무소 및 자치단체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원화 · 중앙 : 환경부 자원순환국 · 지방 : 지방환경청 및 자치단체
법률성격	일반법	일반법
주요원칙	오염자부담원칙 · 생활폐기물 : 자치단체 · 사업장폐기물 : 배출자책임원칙	오염자부담원칙 · 생활폐기물 : 자치단체(종량제) · 사업장폐기물 : 배출자책임원칙
업무범위	· 폐기물의 배출억제 재활용 · 적정처리	· 폐기물의 발생억제 · 재활용 · 적정처리
법률 주요내용	· 국민 · 사업자 · 국가의 책무 · 폐기물 배출 · 운반 · 처리 등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취급업자 · 폐기물의 수출입인가 허가 · 사후관리기금 및 정보처리센터 등	· 국민 · 사업자 · 국가의 책무 · 폐기물 배출 · 운반 · 처리 등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취급업자 · 폐기물 수출입 신고 · 사후관리기금 및 전산처리기구 등
제재수단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및 과태료

일본이 추구하는 순환형사회를 법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는 ‘순환형사회’라 함은 제품

41) 山谷修作, 『循環型社会の公共政策』, 中央經濟社, 2002, 3頁.

등이 폐기물 등이 되는 것이 억제되고, 제품 등이 순환자원이 되는 경우 이것이 적절한 순환이용이 되도록 촉진하고, 순환이용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순환자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분이 확보되어 이로써 ①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②환경에의 부하를 가능한 한 절감하는 사회'이며(제2조①), 그리고 순환형사회의 형성은 이에 관한 행동이 그 기술적 및 경제적인 가능성에 입각하면서 자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건전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 추진되는 취지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 2) 3R 정책의 추진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경제활동을 전환하여 환경·자원 제약에 대한 제약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제성장의 요인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로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순환형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현안과제로 상정한 등장한 일본은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平成 12(2000)년 6월 2일 법률 제110호)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3(1991)년 4월 26일 법률 제48호) 등에 기하여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3R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은 종래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경제시스템에서 탈각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산업의 환경화(사업활동에서 환경제약·자원제약에 대한 대응)” 및 “환경의 산업화(환경제약·자원제약에 대한 대응을 통한 시장가치의 창조)”로 21세기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고자 한다.

3R 정책은 순환형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1999년 산업구조심의회 보고서 “순환형경제시스템의 구축을 향하여”(순환경제의 비전) 중에 정리된 것으로<sup>42)</sup> 종래의 리사이클(1R) 대책을 확대하

42) “循環型經濟システムの構築に向けて”(環境經濟ビジョン), 平成11(1999)年7月 産

여 Reduce(폐기물 발생억제)<sup>43)</sup>, Reuse(재사용)<sup>44)</sup>, Recycle(재자원화)<sup>45)</sup>라는 이른바 “3R” 정책을 추진할 것이 제안되었다. 동 보고서는 3R의 추진을 사업자, 국민,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순환형사회의 형성에서 요구되는 기준설정, 민간활력의 활용에 의한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3R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집중적 실시에 의한 새로운 순환형대응·환경비즈니스의 창출·발전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입각하여 2000년 5월 국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본법 이외 폐기물·리사이클법체계가 순차적으로 정비되었다.

## (2) 순환형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법체계와 내용

### 1)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법체계

일본은 2000년 5월 제147회 통상국회에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등 10개의 환경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표 1>참조, 다만 자동차 리사이클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이렇게 많은 환경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1970년 “공해국회”<sup>46)</sup>를 이은

業構造審議會 地球環境部會/廢棄物・リサイクル委員會.

43) 자원절감 및 장기수명을 가지는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등으로 관련된 자원이 유효성을 제고하며, 폐기물로 되는 형태의 자원이용을 최소로 한다.

44) 일단 사용된 제품을 회수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한 제품으로써 재사용을 도모함. 또한 재사용가능한 부품의 이용을 도모한다.

45) 일단 사용된 제품이나 제품제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을 회수하여 원재료로써 이용[자원 리사이클링]하거나 소각열의 에너지로써 이용[熱 리사이클링]을 도모한다.

46) 1970년 11월말에 열린 임시국회(제64회 국회)는 당시 공해대책을 촉구하는 여론, 높은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공해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토의가 행하여져 “공해국회”라고 불린다. 일본정부는 전국각지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공해에 대한 대처에는 공해관계법제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이에 공해대책기본법개정안을 비롯한 공해관계 14법안을 제출하고, 그 전부를 가결 통과시켰다. 당시 법체계 정비의 포인트를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①공해대책이 경제우선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이른바 “조화조항”을 삭제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명확히 하고, ②대기·수질오염은 종래의 지정지역의 규제에서 전국규제로, 또한 규제대상물질을 확대하

“순환형사회형성의 원년”이라고도 한다. 2000년에 이렇게 폐기물, 리사이클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었던 것은 2001년 4월부터 중앙부처의 재편에 따른 법령정비의 면도 있다할 수 있지만, 법제상의 체계정비가 사용후제품의 재이용·재자원화(리사이클링)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의 발전에 커다란 모멘트가 될 것을 기대를 모으며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sup>47)</sup>

<표> 순환형사회 관련 법

기 본 법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2000)
리사이클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에 관련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2000)</li> <li>·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2000)</li> <li>· 용기포장에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생품화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5)</li> <li>· 특정 가정용기기 재생품화법(1998)</li> <li>· 사용 후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2002)</li> </ul>
자원이용 등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촉진에 관한 법률(2000)</li> <li>·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1)</li> <li>↳ 자원의 유효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0, 법명변경)</li> </ul>
폐기물 등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li> <li>· 가축배설물의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9)</li> </ul>

여 규제강화를 도모하였고, ③사업자의 기준준수·지도권한을 거의 전면적으로 지방에 위임하고, 또한 가중규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47) 大塚直, “循環型諸立法の全体的評価”, JURIST 1184号(2000.9), 2頁.

## 2) 순환형사회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정 및 내용

### 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제정과정

1997년 11월 중앙환경심의회<sup>48)</sup>는 폐기물 등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기물의 등의 순환이용이 불충분하다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리사이클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폐기물에 관련한 환경부하저감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제1차 답신)].

1999년 3월에는 중앙환경심의회 폐기물분회는 [종합적, 체계적, 구체적인 폐기물·리사이클 대책의 기본사고방식에 관한 정리]가 당시 환경청 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통산성(현 경제산업성),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에 있어서도 ‘순환형경제시스템’의 구축, 폐기물행정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움직임으로는 1999년 당시 연립여당의 정책합의문서에서 2000년도를 ‘순환형사회 원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 방향으로서 법률의 제정을 명시된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1999년 12월과 2000년 1월에는 여당 및 정부안(환경청안)이 공포되었고, 2000년 4월 14일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것이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26일 제정되었다.

48) 환경기본법 제41조에 의거하여 2001년 1월 6일에 설치된 환경대신 자문기관. 소관사무로서는 환경기본계획안 작성에 관한 심의(동법 제15조제3항), 환경대신 또는 관계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항을 처리한다. 조직적으로는 종합정책부회, 폐기물·리사이클부회, 순환형사회계획부회, 환경보건부회, 지구환경부회, 대기환경부회, 소음진동부회, 수(물)환경부회, 토양농약부회, 瀬戸内海部会, 자연환경부회, 야생생물부회, 동물애호부회가 있으며, 위원정원은 30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환경성대신 관방총무과가 업무를 담당하다.

## ②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내용과 쟁점

### (가) 법형식 및 규율대상에 관한 쟁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하 ‘순환기본법’)은 환경기본법 아래에 위치하는 폐기물·리사이클 관련 기본법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본법 아래에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의 당부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은 선례가 있어 특히 문제로 제기되지 아니하였다.<sup>49)</sup> 다른 하나는 ‘순환’이라는 용어는 자연의 물질순환과 경제시스템에서의 물질순환이 있는데, 순환기본법은 어느 범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환경기본계획에서는 자연의 물질순환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한 환경악화의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에너지의 효율화 등으로 경제사회시스템에서의 물질순환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 2가지의 순환이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법은 경제사회시스템에서의 물질순환 가운데 폐기물·리사이클에 관련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성질을 달리하는 자연에너지의 문제는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sup>50)</sup>

### (나) 순환기본법의 구성

순환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6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추진하여야 할 ‘순환형사회’의 모델제시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자원의 순환이용, ㉢적정한 처분의 확보로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둘째, 법의 대상으로서 ‘폐기물 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가운데 유용한 것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종래 행정상 폐기물은

49) 이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제조(物づくり)기본법의 관계를 말한다.

50) 大塚直, 前掲論文, 3頁.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여, 이것이 유가물이라고 위장하여 탈법적으로 다루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되었고, 또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리사이클을 방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과 ㉡그 이외의 물품(㉢한번 사용된 물품, ㉣사용되지 않고 수집 또는 폐기된 물품 : ㉤, ㉥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물품<sup>51)</sup>을 합쳐서 ‘폐기물 등’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유·무가치를 불문한다. 따라서 유가물의 처분에는 규제가 없었던 것을 변경하여 유가물에 대하여도 규제가 이루어지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폐기물 등’ 가운데 유용한 것을 ‘순환자원’으로 정하고 그 순환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문언상 ‘폐기물 등’ 중에는 무용한 것도 상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입법담당자는 어느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는 반드시 다른 산업의 자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물품은 경제적 제약을 무시하면 유용하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한다.<sup>52)</sup>

셋째, 처리의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였다. (1)발생억제, (2)재사용, (3)재생이용, (4)열사용, (5)적정처분이라는 순서로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상위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5조 내지 제7조). 여기에서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라 함은 산업단위의 기술·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기술·경제적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현실 추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sup>53)</sup>

넷째,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사업자의 배출자책임(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적정

51) 이에 관해서는 EU의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日本 제147회 국회 중의원 상공위원회회의록 제14호(2000.4.26) 34頁.

53) 日本 제147회 국회 중의원 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39頁.



한 처분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라는 한도에서 국민의 책무(제12조제1항, 제18조제2항)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사용되어 폐기물로 된 후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확대생산자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대한 일반적 책임규정을 둔 것이다(제11조제3항, 제18조제3항). 전자의 배출자로서의 사업자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물법에서 명시하였고(폐기물법 제3조,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10조),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도 유사규정이 있기 때문에(폐기물법 제2조의3) 순환기본법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후자의 확대생산자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순환기본법이 이 개념을 일반적으로 제시한 점이 의의가 있다.

순환기본법은 확대생산자책임에 대하여 (1)폐기물 등으로 되는 것의 억제조치(이 중 일정제품의 제조·판매의 금지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포함가능), (2)표시, 설계의 배려(제11조제2항), (3)인수·리사이클조치(제11조제3항), (4)순환자원의 가능한 한 이용(제11조제4항)의 4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확대생산자책임 중에서 (3)이 환경부하저감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반면 과도한 면이 있어 순환기본법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책무로서의 인수·리사이클의 요건(제11조제3항)에 대하여는 (1)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2)설계, 원재료의 선택, 순환자원의 수집 등의 관점에서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이지만, 인수·리사이클의 규제조치를 도입하는 요건으로서 이 2요건 이외, (3)해당 순환자원의 처분기술상의 곤란성, 순환이용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였다(제18조제3항). 폐기물처리·리사이클에 대하여 각 주체의 적정한 역할분담(Shared Responsibility)의 견해가 환경

기본계획<sup>54)</sup>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과 확대생산자책임을 어떻게 관련 지우는가가 논의되어 왔다(OECD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순환기본법은 역할분담(SR)의 견해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하고 있고, 순환기본법은 이를 전제로 앞의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확대생산자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한다.

순환기본법은 확대생산자책임을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품판매시에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내부화 : 폐기시에 무상인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내부화(무상인수)하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유상인수)으로 정리할 수 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확대생산자책임을 근거지우기에는 외부비용의 내부화가 방식이 필요하고, 생산자에 의한 무상인수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비용부담의 문제와 함께 누가 리사이클을 실시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확대생산자 책임에는 무상인수의 경우와 유상인수의 경우 양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상인수유형과 유상인수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할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sup>55)</sup>

다섯째, 순환형사회형성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을 다음과 내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제15조). 즉 (1)원안은 중앙환경심의회에 지침에 따라 환경대신이 책정한다. (2)계획책정에 있어 중앙환경심의회에 의견을 청취한다. (3)계획은 정부가 일체로 추진하기 하기 위하여 관계대신과 협의하고,

54) 환경기본법(1993)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부전체의 (1)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시책의 대강, (2)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이 중앙환경심의회에 의견을 듣고, 각의결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4년 12월 책정되고, 2000년 12월에 개정되었다. 순환, 공생, 참가, 국제적 협조를 장기적 목표로 정하고, 지구온난화대책, 순환형사회의 형성, 교통대책, 물(수)순환의 확보, 화학물질대책, 생물다양성의 보전, 환경교육·환경학습 등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55) 大塚直, 前掲論文, 5頁.

각의결정으로 책정한다. (4)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면 환경대신은 이를 국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표한다. (5)계획의 책정기한에서 5년마다 검토를 명기한다. (6)국가의 다른 계획은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한다(이점은 환경기본계획을 능가하는 점이다. 환경기본법 제15조, 환경기본계획 참조). 중앙환경심의회는 지침과 계획안의 작성의 2번에 걸친 의견개진이 주어진다. 이러한 계획수립시에는 공청회 및 청문(public comment)을 실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와 같이 환경기본계획에는 없는 국회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은 연립여당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56)</sup>

여섯째, 순환형사회형성을 위한 국가의 시책이 명시되었다. (1)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제17조), (2)배출자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제 등의 조치(제18조제1항), (3)확대생산자책임의 구체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제품의 인수(제18조제3항), 순환적 이용의 실시(제18조제4항), 제품 등에 관한 사전평가, 설계에 대한 기술지원,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제20조)), (4)재생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제19조), (5)환경보전상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사업자에게 그 원상회복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치(제22조), (6)원재료 등의 폐기물 등으로 되는 것으로 억제하기 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제23조), (7)국가에 의한 필요한 조사의 실시(제29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 가운데 이미 환경기본법, 폐기물법,再生资源이용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적지 않지만, 폐기물·리사이클에 관한 조치를 망라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책의 전체상을 명확히 하고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3)의 제품의 인수·리사이클 의무는 구체적으로 가전리사이클법,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회수리사이클에서 정하고 있다. 순환적 이용을 실시

---

56) 大塚直, 前掲論文, 6頁.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기존의 것으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업종을 들 수 있다. 또한 녹색(green)구입법은 (4)에 대응하고 있지만, (3)의 순환적 이용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된다). 제품 등의 사전평가(제20조제1항)의 구체화로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제품대책으로서의 ‘지정자원절감제품’을 들 수 있다. 사전평가의 내용에 내구성, 처분 곤란성 등(쓰레기로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으로 기대) 이외 유해물질의 종류, 양 기타 제품 등이 순환자원으로 되는 경우 처분에 따르는 ‘환경부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제20조제1항제4호). 이것은 제품의 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할 것을 내포하고,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제조를 위한 노력의 기초를 이룬다. (5)의 내용은 폐기물법 2000년 개정에서 도입되었다(제19조의6에서 불법투기의 경우에 다른 자에게 위탁한 후라도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순환기본법에서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3)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앞서 언급한 ‘종합법제안’은 일본의 순환기본법에 대하여 (1)제조자 책임, (2)처리에 관한 우선순위 확립, (3)목표설정과 계획적 대응을 주요한 과제로 상정하였다. 이번의 기본법에서는 (1), (2)는 도입하였고, (3)에 대해서는 순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규정되었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하는 구조로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그렇지만 국회 위원회에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에서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자원과 폐기물을 나누는 것이 물질순환을 2분하는 것으로 지금의 폐기물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폐기물관련법과 리사이클관련법과의 분단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언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법과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통합하는 방법과 양자의

기본법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의 기본법은 후자의 방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지만, 기본법을 채택하면서 생기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실체적인 규정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개별법의 제정·개정이 필연적이다. 장기적으로 폐기물법과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sup>57)</sup> 그리고 구체적인 의의와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 1) ‘폐기물 등’의 개념도입은 종래의 폐기물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폐기물을 무가의 물건으로 한정하는 방식)를 전제로 하면서 생산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제품 이외의 물건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을 절묘하게 채용한 점은 평가가 가능하다. 이 개념의 도입으로 유가(有價)에 대한 것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유가의 물건에 대한 리사이클에서도 환경부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규제는 불가결한 것으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중심으로 하는 리사이클관련법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
- 2) 순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중앙환경심의회를 2회 거쳐 계획책정 절차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것(전술한 바와 같이 공개논평 절차,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정되어 있고, 국회에서의 보고와 5년마다의 재검토 등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NGO 등을 포함하는 제3자 기관에 의한 계획책정이 논의되었지만, 기본법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순환형사회형성을 추진함에 있어 자극을 다소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 기본계획이 보다 개별적·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기본법의 계획과 환경기본계획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57) 大塚直, 前掲論文, 7頁.

- 3) 기본법에서는 많은 개개의 시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물질순환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책으로서 폐기물 발생억제·적정이용·적정처분추진을 위한 경제적 방법, 직접적 방법, 폐기물의 회수·리사이클의 기업화에 의한 경제적 방법, 자주적인 노력 등이 있지만, 이러한 시책의 조합을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주적 노력에 있어 충분히 노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공평성이 부족하고, 무임승차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목표달성의 정도를 공개하여 노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 4) 폐기물법과의 문제이지만, 기본법의 제정 결과 폐기물의 분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확대생산자책임이 중시되면 폐기물을 사업자가 처리하는 ‘사업폐기물’, 지자체가 유상으로 처리하는 ‘가정폐기물’ 이외 제조자가 회수·리사이클하는 ‘제물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 5) 처리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상위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지만, 제한이 많고, ‘가능한 한’이란 단서는 거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벌칙에 대하여 기본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면 벌칙을 규정하기도 어렵다.<sup>58)</sup> 벌칙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은 각 업계의 사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은 빈번히 개정될 수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58) 독일 자원순환폐기물법에서도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1) 배 경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로서는, 오물의 위생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 『오물청소법』이 1900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여 1954년에 『청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집중과 경제활동의 발전에 의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산업폐기물이 배출되게 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1970년의 12월의 소위 공해국회(제64회 임시국회)에서 청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소법)이 제정되어 사업자의 산업폐기물 처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산업폐기물의 처리체계가 확립되었다.<sup>59)</sup>

그 후,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기조로 하는 경제규모 확대에 의해 폐기물 배출량의 증대, 질의 다양화가 한층더 진행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난, 불법투기가 사회문제화되었다. 그 때문에, 폐기물처리체계의 확충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폐기물 배출억제와 재생이용에 의한 감량화의 평가, 특별관리폐기물 제도의 특별관리산업폐기물관리표(매니페스트)의 도입, 폐기물처리자·처리시설의 규제강화, 폐기물처리센터 제도의 창설, 불법투기방지를 위한 벌칙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1997년 6월에는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 추진을 위한 특례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의 강화, 관리표의 모든 산업폐기물에의 적용, 생활환경의 보안상 지장 제거 등의 조치 실시, 산업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창설,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에 관계되는 벌칙의 대폭적인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2000년 6

59) ISO環境法(第5版), 71頁

월의 개정에서, 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전한 처리체제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까지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폐기물관리표제도의 재검도, 불법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원상회복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의 강화, 폐기물의 야외소각 원칙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2) 목 적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은 ①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 ②폐기물의 적정한 분별, 보관, 수집, 운반, 재생, 처분 등의 처리를 하고, ③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④생활환경의 보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3) 정 의

- (1) 『폐기물』 : 쓰레기, 대형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불요물로써, 고체상 또는 액상의 것(방사성물질 및 이로써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 (2) 『일반폐기물』 :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조)
- (3) 『특별관리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중 폭발성, 독성, 감염성 기타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법 제2조, 령 제1호)
- (4) 『산업폐기물』 :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스틱류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20종류) 및 수입된 폐기물(항행·휴대폐기물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령 제2호)



- (5) 『특별관리산업폐기물』 : 산업폐기물 중 폭발성, 독성, 감염성 기타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령 제2호의4)
- (6) 『전자정보처리조직』: **정보처리센터**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와 사업자, 운반수탁자, 처리수탁자가 사용하는 입출력장치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법 제2조)

#### 4)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자

- (1) 국민(법 제2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 (2) 사업자(법 제3조, 제11조)
- (3)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 공공장소의 사용자·관리자 등(법 제5조)
- (4)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법 제6조의2)
- (5) 일반폐기물처리업자(법 제7조)
- (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법 제8조)
- (7)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자(법 제9조의8)
- (8) 일반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법 제10조)
- (9) 산업폐기물처리업자(법 제14조)
- (10)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자(법 제14조의4)
- (11)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법 제15조)
- (12)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자(법 제15조의4의2)
- (13)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법 제15조의4의3, 제15조의4의5)
- (14)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자(법 제17조)
- (15) 폐기물재생사업자(법 제20조의2)
- (16) 지방공공단체(법 제4조, 제5조, 제6조)

5) 법률의 대상이 되는 관계자의 책무

① 국 민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 재이용을 도모하며 폐기물을 분별배출하고 가능한 한 스스로 처리하는 등을 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시설에 협력해야 한다.(법 제2조의3)

② 사업자

그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생이용 등으로 감량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 제품, 용기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 그 적정한 처리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법 제3조)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폐기물의 배출이 억제되고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법 제4조)

6)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하여야 할 일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 공공장소의 사용자·관리자 등

- (1)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관리자는 그것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물의 점유자는 시정촌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법 제5조)
- (2) 누구나 공원, 광장, 캠프장,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장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법 제5조)

- (3) 시정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중변소 및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마련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법 제5조)
- (4)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는 생활환경의 보전상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법 5조)

②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

- (1) 일반폐기물을 되도록 스스로 처분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스스로 처분하지 않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분별하고 보관하는 등 시정촌이 실시하는 수집·운반·처분에 협력해야 한다.(법 제6조의2)
- (2)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다량의 일반폐기물이 발생하는 점유자는 시정촌장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일반폐기물의 감량계획의 작성, 일반폐기물을 운반해야 할 장소와 그 운반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법 제6조의2)
- (3) 일반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운반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사업 범위에 일반폐기물 운반이 포함되는 자)에게,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처분업자(사업 범위에 일반폐기물 처분이 포함되는 자)에게 위탁의 기준에 따라 위탁해야 한다.(법 제6조의2, 령 제3호)

③ 일반폐기물처리업자

- (1)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정촌장의 허가·갱신·변경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시정촌장은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7조~제7조의3)
- (2) 일반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행한다. 그리고, 수집·운반·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해서는 아니된다(특별관

리일반폐기물에 있어서는 특별관리일반폐기물처리기준에 따른다.(법 제7조)

- (3)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7조, 규칙 제2의5)
- (4) 누구든지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써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명의대여금지] (법 제7조의4)
- (5)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일반폐기물의 광역적인 처리를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법 제9조의 9)
- (6)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폐기물 기타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성상을 가지는 일반폐기물로서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無害化 처리를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법 제9조의10)

#### ④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고 허가·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지체없이 신청사항 등을 고시하고 1월간 공중에게 공람하게 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5~제9조의7)
- (2)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의 기술상의 기준과 신청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법 제8조의3)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시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법 제8조의4)
- (4) 특정일반폐기물최종처분장(규칙 제4의8에서 정하는 것)의 설치

자의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가 통지하는 금액을 유지관리적립금으로서 적립해야 한다.(법 제8조의 5)

(5) 시설에 관계되는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증진을 배려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 4)

(6)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상의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유자격자인 기술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21조)

⑤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자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을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에게 신청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재생이용에 관계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법 제9조의8)

⑥ 일반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일반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에게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0조)

⑦ 사업자

(1) 시정촌이 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그 일반폐기물의 운반·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반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득업자 기타 성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처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일반폐기물처분업 허가취득업자에게 각각 위탁해야 한다.(법 제6조의2)

(2) 일반폐기물의 운반·처분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운반·처분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법 제6조의2)

(3) 그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법 제11조)

(4) 스스로 그 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

업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

- (5) 그 산업폐기물이 운반되기 전까지는 산업폐기물보관기준(주위의 울타리·배수도랑, 게시판, 저면피복, 보관상의 주의 등)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법 제12조, 규칙 제8)
- (6) 그 산업폐기물의 운반·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그 허가를 받은 자, 기타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기준(업자의 허가조건, 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각각 위탁해야 한다. 그 경우, 그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이 종료하기까지의 일련의 처리행정에서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12조, 령 제6호의2)
- (7) 스스로 그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사업장 마다 산업폐기물처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12조, 규칙 제8의5)
- (8) 다량배출사업자(산업폐기물을 1,000톤/년 이상)는 산업폐기물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고 실시상황을 보고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그것을 공표한다.(법 제12조, 령 제6호의3)
- (9) 스스로 그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의2)
- (10) 그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이 운반되기 전까지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보관기준(주위의 울타리·배수도랑, 게시판, 저면피복, 특별관리산업폐기물보존상의 조치 등)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법 제12조의2, 규칙 제8의13)
- (11) 그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운반·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그 허가를 받은자 기타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기준(업자의 허가조건, 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각각 위탁해야 한

다. 또한, 그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분이 종료할 때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12조의2, 령 제6호의6)

(12) 그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설치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유자격자인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12조의2, 규칙 제8의 18)

(13) 다량배출사업자(특별관리산업폐기물을 50톤/년 이상)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고 실시상황을 보고해야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그것을 공표한다.(법 제12조의2, 령 제6호의7)

(14) 그 산업폐기물의 운반·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산업폐기물 인도와 동시에 수탁한 자에게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폐기물관리표(매니페스트)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표교부자는 관리표의 사본을 송부받았을 때는 운반 또는 처분이 종료한 것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소정의 기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6월에 당해 관리표에 관한 보고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표교부자는 소정 기간 내에 사본의 송부를 받지 않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또한, 허위 기재를 하여 관리표를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한 경우는 관리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매년 제출하는 관리표에 관한 보고서도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한 때 권고할 수 있다.(법 제12조의3~제12조의 6, 규칙 제8의 27)

(15)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과 같은 성상을 가지는 일반폐기물로서 규칙 제12의7의7에서 정하는 것을 그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미

리 일반폐기물의 종류 기타 법정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했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당해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다.(법 제15조의2의4)

⑧ 산업폐기물처리업자

- (1) 산업폐기물의 운반·처분을 수탁한 자는 관리표를 5년간 보관한다. 관리표 제도의 위반행위에 관계되는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는 공표, 명령조치를 받는다.(법 제12조의3, 제12조의6)
- (2) 산업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갱신·변경의 허가 등을 받아야한다(사업자 스스로 운반·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제14조의3)
- (3) 산업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행한다. 그리고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운반·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해서는 아니된다.(법 제14조)
- (4)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14조, 규칙 제10의8)
- (5)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산업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써 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법 제14조의3의2)

⑨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자

- (1)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갱신·변경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사업자 스스로 운반·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의4~제14조의6)



- (2)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행한다. 그리고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해서는 아니된다.(법 제14조의4)
- (3) 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처분업자·기타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자는 특별관리일반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의 업을 행할 수 있다.(법 제14조의4)
- (4)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14조의4, 규칙 제10의21)
- (5)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써 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직별규정).(법 제14조의7)

⑩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 (1)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변경허가 등을 받아야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지체없이 신청사항 등을 고시하고 1월간 공중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2의4, 제15조의3, 제15조의4)
- (2)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의 기술상의 기준과 신청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법 제15조의2의2)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시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법 제15조의2의3)
- (4) 특정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 설치자의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가 통지하는 금액을 유지관리적립금으로서 적립해야 한다.(법 제15조의2의3)
- (5) 시설에 관계되는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증진을 배려하여야 한다.(법 제15조의4)

- (6)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상의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유자격자인 기술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21조)
- (7)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그러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이 고온이 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시설, 폐기물의 처리에 동반하여 가연성의 기체가 체류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시설, 폐유,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처리시설로 성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처리시설에서 파손 기타 사고가 발생하고, 처리하는 폐기물 또는 처리에 동반하여 발생한 오수와 기체가 비산, 유출, 지하침수 또는 발산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을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는 곧바로 응급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사고의 상황 및 강구한 조치의 개요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21조의2, 령 제24호)

⑪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자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을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에게 신청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재생이용에 관계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법 제15조의4의2)

⑫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1)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한 자는 특례적으로 사업자로 간주한다. (법 제15조의4의3, 제15조의4의4)
- (2) 산업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5조의4의5)

⑬ 국 민

- (1) 누구든지 폐기물을 함부러 버려서는 아니된다.(직별규정).(법 제 16조)
- (2)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행하는 폐기물의 소각, 사회의 습관상 어쩔 수 없는 폐기물의 소각 등을 제외하고 누구도 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아니된다.(법 제16조의2)
- (3) 누구든지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성상을 가지는 (정령에서 「황산피치」가 정해진) 특정유해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또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법 제16조의3)

⑭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자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비료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법 제15조)

⑮ 폐기물재생사업자

- (1) 광역적인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대신이 인정한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법 제9조의9, 제15조의4의3)
- (2) 폐기물 재생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시설, 능력이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법 제20조의2)

□ 지방공공단체

- (1)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3, 5조의4)

- (2) 시정촌은 일반폐기물 감량 등을 위해 폐기물감량 등 추진심의회  
의 설치, 폐기물감량 등 추진원을 위촉할 수 있다.(법 제5조의5,  
제5조의6)
- (3) 시정촌은 일반폐기물처리계획을 정하여 공표한다. 일반폐기물을  
정령에서 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기준(보관기준을 포함한다)에 따  
라 수집·운반·처분하고 시정촌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일반폐기물의 위탁기준에 따라 위탁해야 한다. 특별관리일반폐기  
물의 경우는 각각 특별관리일반폐기물처리기준과 특별관리일반폐  
기물의 위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토지 또는 점유자에 대해 그 감  
량계획의 작성, 운반해야할 장소와 그 운반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환경대신이 지정한 적정처리가 전국각지에서 곤란해진 물  
질의 적정처리에 대해 사업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6  
조, 제6조의2, 제6조의3)
- (4) 시정촌은 일반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  
관리의 기술상의 기준과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고 그 기록을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시키는 등을 해야 한다. 도  
도부현 지사는 필요한 때 당해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법 제9조의3)
- (5)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처  
리를 산업폐기물처리기준(또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해 행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3조)
- (6) 도도부현 지사는 폐지 후의 폐기물처리장 터 등에 있어, 그 토  
지의 굴삭 등에 의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구역으로서 지정하고 공

시한다. 그 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시행방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지장의 제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의17~19, 제19조의10)

- (7)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장은 폐기물인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보고서 징수 및 출입검사·무상납부를 시킬 수 있다.(법 제18조, 제19조)
- (8) 일반폐기물처리기준 또는 산업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처분자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법 제19조의4, 제19조의5)
- (9) 도도부현 지사는 산업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i)처분자만으로는 제거가 곤란한 때. (ii)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있을 때, 부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발생에서 최종처분까지의 일련의 행정에서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에 배출사업자 등에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적당할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등에 대해 기한을 정해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법 제19조의6)
- (10)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법 제19조의7~제19조의9)
- (11) 도도부현 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및 정화조 등의 출입검사·폐기물처리의 지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유자격자 직원 중

에서 환경위생지도원을 지명한다.(법 제20조)

- (12)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설치자는 곧 바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그 응급처치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법 제21조의2)

### 7) 국가의 주요시책

- (1)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국내에서 적정처리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입이 억제되어야 한다.(법 제2조의2)
- (2)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공표한다.(법 제5조의2)
- (3) 국가는 폐기물의 위탁기준·처리기준·보관기준·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한다.(법 제6조의2, 제7조, 제8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의2의2)
- (4) 환경대신은 일반폐기물 중에서 적정한 처리가 전국각지에서 곤란한 것을 지정하고, 소관하는 대신에게 사업자의 협력이 얻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6조의3)
- (5) 환경대신은 정보처리센터 및 산업폐기물적정처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13조의2~제13조의16)
- (6) 환경대신은 국가 등의 출자 등에 관계되는 법인 등의 신청에 의해 폐기물처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15조의5~제15조의16)
- (7) 도도부현 지사·시정촌장·환경대신은 필요한 한도에서 보고징수·출입검사를, 필요한 때 개선명령·조치명령을 행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9조의4)
- (8) 환경대신은 산업폐기물의 부적정처리에 의한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21조의3)

- (9) 규정위반, 명령위반 등에 대해 벌칙을 정했다.(법 제25조~제34조)
- (10) 긴급시에는, 환경대신은 산업폐기물에 관해 보고서징수·출입 검사를 행할 수 있다. 국가는 광역적인 견지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조정 등을 행한다.(법 제4조, 제23조의2, 제24조의3)

### 8) 유의점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모두를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보관은 옮겨쌓기를 행하는 경우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이 운반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경우는 산업폐기물보관기준(울타리, 게시판 등)에 따라 옮겨쌓고 보관해야 한다.

산업폐기물관리표(매니페스토)의 관리에서는, 사업자에게는 위탁업자로부터 송부된 사본 내용, 송부기한, 최종처분의 확인의무 등 산업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처리행정에서의 관리표와 관계되는 주의의무가 중요하고, 관리표의 비교부, 허위 기재 등은 직벌의 대상이 되어 있다. 불법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생활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 관계된 처분자 등에 대해 그 지장의 제거 등[원상회복]의 조치가 명해진다. 그러나 처분자 등으로만은 원상회복조치가 곤란하고 또한 배출자가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한 때에 배출자에게 그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가 명해진다[배출자책임의 원칙].

배출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관리표(매니페스토)의 교부가 필요하지만, 오로지 재생이용의 목적이 되는 산업폐기물만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당해산업폐기물만의 운반 또는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등 규칙 제8조의19에서 정하는 경우는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분을 수탁한 자도 곧 바로 처벌된다.<sup>60)</sup>

60) ISO環境法(第5版), 85頁

배출사업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우량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창설,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2005년 4월 1일 시행). 도도부현 지사 등은 ①사업내용, 처리시설의 능력과 처리실적 기타에 대한 정보공개, ②행정처분을 5년 이상 받지 않았을 것, ③ISO14001 또는 에코액션21의 인증취득 등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자에 대하여 허가절차의 간소화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산업폐기물처리업자의 우량성의 판단평가제도).<sup>61)</sup>

#### (4)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1) 배경

최근, 폐기물의 배출량이 증대하고 기존의 소각시설·최종처분장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 때문에, 자원절약[省資源<sup>62)</sup>]과 자원의 재이용을 포함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1990년 12월, 통상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가 『앞으로의 폐기물처리·재자원화대책의 방식』을 답신했다. 그에 기초하여 『재생자원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안』이 작성되고 1991년 3월 제120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하여 4월 26일에 공포되고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활동의 확대에 동반하여 증대하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이 심각해졌다. 1999년 7월 산업구조심의회는 보고서 『순환형 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를 공표하고 지금까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경제사회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자원의 제약 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폐기물·재활용대책을 발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을

61) ISO環境法(第5版), 86頁

62) “성자원”(省資源)이란 “과잉 생산·소비를 억제하고 재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바탕으로,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도 제시된 3R(Reduce, Reuse, Recycle)의 대처를 도입하고 법률의 명칭도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여 제147회 통상국회에서 가결, 성립하였고 2000년 6월 7일 공포되어 200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sup>63)</sup>

## 2) 목 적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은 ①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고, ②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환경의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③사용제 물품 등과 부산물의 발생 억제 및 재생자원과 재생부품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④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3) 정 의

- (1) 『사용제 물품 등』: 한번 사용된 것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집된 것 또는 폐기된 물품(방사성 물질 및 그것에 의해 오염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 (2) 『부산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혹은 판매,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건설공사)에 동반하여 부차적으로 얻어진 물품(방사성 물질 및 그것에 의해 오염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 (3) 『부산물의 발생억제 등』: 제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등의 물품(원자재를 말한다. 에너지절약법의 연료 등을 제외한다)의 사용 합리화에 의해 부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 및 부산물의 재생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 (4) 『재생자원』: 사용제 물품 등과 부산물의 유용한 것으로, 원재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

63) ISO環境法(第5版), 87頁

- (5) 「재생부품」: 사용제 물품 등과 부산물의 유용한 것으로, 부품 기타 제품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 (6) 「재자원화」: 사용제 물품 등의 유용한 것으로, 재생자원 또는 재생부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 (7) 「특정자원절약업종」: 부산물의 발생억제가 가능하고 그 발생억제가 원재료에 관계되는 자원 및 그 부산물에 관계되는 재생자원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펄프·종이 제조업, 무기·유기화학공업제품제조업, 제철·제강·제강압연업, 동(銅)제1차정련·정제업, 자동차제조업].(법 제2조, 령 별표 제1)
- (8) 「특정재이용업종」: 재생자원 또는 재생부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재생자원 또는 재생부품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종이제조업, 경질 염비관 또는 관계수(管繼手)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복사기제조업, 건설업](법 제2조, 령 별표 제2)
- (9) 「지정자원절약화제품」: 제품의 원재료의 사용 합리화, 그 장기간 사용의 촉진 등에 의해 사용제 제품의 발생억제를 촉진하는 것이 원재료 등의 자원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것을 말한다[자동차, 컴퓨터, 에어컨, 파칭코기계, 가전제품, 석유스토브 등 19제품].(법 제2조, 령 별표제3)
- (10) 「지정재이용촉진제품」: 제품·부품 등을 재생자원 또는 재생부품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제품[자동차, 컴퓨터, 에어컨, 파칭코기계, 가전제품, 복사기 등 50제품].(법 제2조, 령 별표 제5)
- (11) 「지정표시제품」: 재생자원으로서 분별회수를 위한 표시가 특별히 필요한 제품[알루미늄캔, 스킨캔, 페트병, 소형2차전지, 종이제·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등 7제품].(법 제2호, 령 별표 제5)

- (12) 「지정재자원화제품」: 자주회수가 가능하고 재자원화가 특별히 필요한 제품[컴퓨터, 소형2차전지, 소형2차전지사용기기중의 소형2차전지].(법 제2조, 령 별표 제6)
- (13) 「지정부산물」: 에너지 공급 또는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부산물로서 재생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것[슬러그(고로에 의한 제철업 및 제강·제강압연업), 석탄재(전기업), 토사, 콘크리트괴, 아스팔트 콘크리트괴, 목재(건설업)].(법 제2조, 령 별표 제7)

#### 4)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자

- (1) 사업자 등(공장·사업장·물품판매의 사업자 및 건설공사의 발주자)(책무규정)(법 제4조)
- (2) 소비자(책무규정)(법 제5조)
- (3) 지방공공단체(책무규정)(법 제9조)
- (4) 특정자원절약사업자(특정자원절약업종에 속한 사업자)(법 제10조, 령 별표 제1)
- (5) 특정재이용사업자(특정재이용업종에 속한 사업자)(법 제15조, 령 별표 제2)
- (6) 지정자원절약화사업자(특정자원절약화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법 제18조, 령 별표 제3)
- (7) 지정재이용촉진사업자(지정재이용촉진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법 제21조, 령 별표 제4)
- (8) 지정표시사업자(지정표시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법 제24조, 령 별표 제5)
- (9) 지정재자원화사업자(지정재자원화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법 제25조, 령 별표 제6, 제8)

(10) 지정부산물사업자(지정부산물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법 제34조, 령 별표 제7)

5) 법률의 대상이 되는 관계자의 책무

① 사업자 등

(1) 공장 혹은 사업장(건설공사도 포함한다)에서 사업을 행하는 자 및 물품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사업자) 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그 사업발주에 있어 원재료 등의 사용 합리화를 행함과 동시에 재생자원·재생부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4조)

(2) 사업자 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그 사업에 관계되는 제품이 장기간 사용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사업에 관계되는 제품이 한번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수집되거나 폐기된 후 재생자원 혹은 재생부품으로서 이용되는 것을 촉진하거나 그 사업 혹은 그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부산물을 재생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4조)

② 소비자

제품을 되도록 장기간 사용함과 동시에 재생자원·재생부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5조)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1) 국가는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 과학기술의 진흥, 국민의 이해를 심화하는 조치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8조)

(2)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9조)

6) 법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하여야 할 일

① 특정자원절약사업자(특정자원절약업종에 속한 사업자)

- (1) 주무대신이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부산물의 발생억제, 재생자원의 이용에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한다.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지정·조언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1조)
- (2) 제품의 생산량이 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산물의 발생억제 등의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 제출한다.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권고·공표·명령할 수 있다.(법 제12조~제14조)

② 특정재이용사업자(특정재이용업종에 속한 사업자)

- (1) 주무대신이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재생자원·재생부품의 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지도·조언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6조)
- (2) 제품의 생산량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금액이 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권고·공표·명령할 수 있다.(법 제17조)

③ 지정자원절약화사업자(지정자원절약화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

- (1) 주무대신이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사용제 물품 등의 발생억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지도·조언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9조)
- (2)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권고·공표·명령할 수 있다.(법 제20조)

④ 지정재이용촉진사업자(지정재이용촉진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

- (1) 주무대신이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재생자원·재생부품의 이용

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지도·조언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2조)

- (2)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판매업자도 포함한다)에 대해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권고·공표·명령할 수 있다.(법 제23조)

⑤ 지정표시사업자(지정표시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

- (1) 주무대신이 정하는 표시표준에 따라 표시하고 재생자원의 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24조)
- (2)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권고·공표·명령할 수 있다.(법 제25조)

⑥ 지정재자원화사업자(지정재자원화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

- (1) 주무대신이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자주회수, 재생자원·재생부품의 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지도·조언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32조)
- (2) 컴퓨터 제조 등의 사업자는 사업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자주회수·재자원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2003년 10월 1일 이후 가정용 컴퓨터의 자주회수 및 재자원화를 시행하게 되었다.(판단기준개정 2003년 4월 7일 經産·環 령 제1호)
- (3) 지정재자원화사업자는 자주회수 및 재자원화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법 제27조~제31조)
- (4)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권고·공표·명령할 수 있다.(법 제33조)

⑦ 지정부산물사업자(지정부산물업종에 속한 사업자)

- (1) 주무대신이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부산물에 관계되는 재

생자원의 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 지도·조언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35조)

- (2) 에너지 공급량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금액이 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대신은 필요한 때에 권고·공표·명령할 수 있다.(법 제36조)

#### 7) 국가의 주요시책

- (1) 주무대신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공표한다.(법 제3조)
- (2) 주무대신은 각종 사업자의 판단기준·표시기준을 정하고 공표한다.(법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4조)
- (3) 주무대신은 필요한 한도에서 보고징수·출입검사를 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38조)
- (4) 명령위반, 허위보고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제정하였다.(법 제42조~제44조)

#### 8) 유의점

2000년 6월 7일의 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재활용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에서 제시된 3R[폐기물발생의 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이용(Recycle)]의 기본원칙이 도입되었다.<sup>64)</sup> 지금까지 3업종·30품목이었던 것이 10업종·69품목이 되어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50%를 망라하게 되었다. 해당업종, 제품에 관계되는 사업자에게는 노력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물론, 명령위반 등에는 벌칙이 있고 모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각 사업을 행하는 자의 구체적인 촉진에 관한 판단기준은 성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지

---

64) ISO環境法(第5版), 94頁

정 재이용 촉진제품에 관한 판단기준』(성령)이 2006년 4월 27일에 개정되어 컴퓨터 등 7기종에 대하여 대상제조사업자, 수입판매사업자는 부품 등에 함유되는 유해물질(EU의 RoHS규제의 대상인 납 및 그 화합물 등 6물질)의 종류 및 함유율의 파악, 정보의 제공 등이 정해져 있다(2006년 7월 1일 시행).



## 제 4 장 법제정비 방향

### 1. 쟁점분석

앞에서 현행법제의 구조와 과제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 전환 내지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와 표준화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순환자원의 개념에 기초한 자원순환 체계와 같은 혁신적인 장치들을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상류 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산업구조를 전환시킬 만한 힘과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충분히 연동되지 못하고 제품과 부품의 환경성·규격화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순환사회의 형성”이라는 기대에 적절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 하류 부문에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개념이 “폐기물” 관리체계와 불분명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재활용에 방해가 되는 제품의 설계와 디자인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관할 부처들은 이러한 구조적 과제들이 존재함에도 개별법령과 계획들의 집행에서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법제도가 자원순환의 상류와 하류의 회귀를 저해하는 현상을 간과하기 쉽다. 현행 법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은 개별시책들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여야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면서도 전체를 모아 놓으면 정합성이 떨어지는 “구성의 모순”을 거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산업구조의 전환 법제와 자원순환의 촉진법제는 상류와 하류가 다시 만나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integrated management)가 왜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가 그리고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산업구조의 전환 부문에서는 현행법제가 상정하는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서도 일부 산업에 대하여서는 규율이 미치지 못하고 명령통제형 질서를 보완하는 자율질서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관건이다. 자원순환 촉진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논리구조에 갇혀 있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 “순환사회”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인가의 여부가 해묵은 쟁점이다.

## (1) 통합적 관리

### 1) 행정청 중심의 입법

정부가 바뀌면 행정조직이 개편되고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부처별 관할 법률들이 바뀌는 현상을 종종 목격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법체계는 정부조직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행정조직에 따라 법을 바꾼은 “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와 맞지 아니한다. 산업구조나 자원순환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에 속한 부처 상호간의 정책적 연계의 미흡은 이론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통할·조정 권능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산업구조와 자원순환에 관한 종래의 입법과 법집행에서는 입법과 관련하여 법치주의 원칙보다 행정청 중심주의가 종종 우선하였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의 통합적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들은 직역을 둘러싼 관할 행정청 상호간의 의견 불합치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예컨대, 제품이나 원료 또는 부품 등의 표준화·규격화는 상류에서 산업구조를 규율

하는 부처의 전속관할에 맡기기보다는 하류에서 폐기물을 규율하는 부처와의 공동관할에 맡기는 편이 자원순환에 도움이 된다.

## 2) 상류와 하류의 비대응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제품이나 부품의 디자인이 독특하고 다양할수록 좋겠으나 자원순환의 관점에서는 디자인이나 규격의 독창성과 다양성은 역작용을 일으킨다. 예컨대, IT제품의 경우에는 표준화·규격화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자동차나 중기의 부품이나 가전제품의 부품은 이종 제품이나 부품간의 호환이 어렵다. 건축물이나 가구류는 더욱 그렇다. 규격이 달라 종류가 같거나 기능이 유사한 제품에 재활용·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부품의 디자인이나 규격이 같아도 제품 전체의 디자인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표준화법과 재활용법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연계장치가 희소하다. 관계 부처간의 공동관할,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공동인증, 일정한 범주 내에서 표준모형의 확대 등을 통하여 상류와 하류의 공조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법률 차원의 연계 이전이라도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차원에서 통합적 운용이 가능함에도 부처 할거주의로 인하여 장애를 겪고 있다.

## 3) 규제형 관리체계

순환형 사회에서 또는 자원순환에서 “순환”을 모두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달성하려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거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쉽다. 명령통제형 규제체계를 축소하거나 자율관리 또는 유인 체계로 전환시킴이 바람직스럽다. 규제형 관리체계의 축소나 전환은 특히 오염규제 영역에서 문제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나 재활용·재사용 부문은 규제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보다 조성과 유인에 의하여 작동되기 때문에<sup>65)</sup> 탈규제를 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

명령통제에 의하여 움직이는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여전히 규제의 방법과 한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1995년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법(제5조의2)<sup>66)</sup>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반입수수료]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도구” 원리를 확대하였다. “규제에서 관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도구에 의한 폐기물 관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2) 산업구조의 전환 부문

### 1) 산업구조의 광범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정생산기술의<sup>67)</sup> 개

---

65) 2002년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전문개정법은 경제적 유인방식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동법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며(제14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하는 한편(제16조 내지 제19조),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였다(제22조).

66)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규정은 2007년의 『폐기물관리법』전문개정법에서 제6조로 변경되었다.

67)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환경

발과 인증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동법은 2008년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주요쟁점들이 다수 정리되었으나 여전히 법의 기능에 비하여 법의 명칭이 크고 목적이 광범위하다. “산업구조”의 범주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경친화적”이라는 개념을 목록(agenda)화하기 어렵다는 내재적 한계 등이 존재한다.

## 2) 농·수·축산업에의 적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라는 개념과 범주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이지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구조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조업과 같은 공업을 “산업”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은 농업이나 수산업 그리고 축산업과 같은 제1차 산업이나 그 가공산업에서도 주요한 과제이다.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에는 순환자원이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생선과 같은 수산자원은 가공후 찌꺼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이를 해양에 투기할 때에는 국제협약의 규제를 받는다. 농업·축산업·수산업은 자원순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지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어렵다. 농업·수산업 또는 축산업을 동법에서 규율하는 “산업”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에 따라 동법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공동관할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처럼 적용범위를 특정할 것인가의 여부 등이 문제된다.

## 3) 자율관리의 확대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2003년에 도입된 자발적 협약(VA) 제도<sup>68)</sup> 타율규제를 넘어 자율규제를 지향한다. 폐기물 수거 내지 처리

<sup>68)</sup>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사업자나 그 단체 등의 자율관리 폭이 확대됨이 바람직스럽다. 2003년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법(제43조의3)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허용하였다. 2007년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법은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을 수권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제58조의2제1항). 아쉽게도 이러한 조합 또는 협회의 기능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 (3) 자원순환의 촉진 부문

#### 1) 전통적인 논리 구조

자원순환 체계에서는 폐기물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활용 등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순환시킴이 자연스러운 논리이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질 즉 폐기물은 순환이 아닌 최종처리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책과 실무에서는 폐기물 개념이 전반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구조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재활용 체계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폐기물은 이를 최종처리하고 순환자원을 재활용한다”고 볼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일상의 경로를 벗어난 물질을 일단 “폐기물”로 보고 활용 가능/불능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활용 가능한 자원에는 “순환자원”이라는 색인을 그리고 활용 불가능한 자원 즉 최종처리의 대상이 되는

68)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2003년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법 제16조제1항)

물질에 “폐기물”이라는 색인을 붙이는 방안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1차적인 목적(생산·유통·소비)을 벗어난 모든 자원이나 물질들을 무조건 “폐기물”로 분류하는 관행은 무분별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관리의 관할이 공공처리기관[가정으로부터 폐기물의 회수와 폐기물처분을 분담]과 폐기물의 배출자, 폐기물보유자, 재활용사업자로 분할되므로, “재활용인가” 아니면 “처분인가”의 구분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폐기물에 관한 법제에서도 폐기물의 유해성을 “처분해야 하는 폐기물”을 전제로 한 기준에 따를 것인가 또는 재활용을 “무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의 여부 등이 관건이다. 더욱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분하여야 할 폐기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들이 많지만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sup>69)</sup> 해석상 “재활용”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자원순환·폐기물법의 운용을 법해석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워 “자원 또는 물질 별로 구체적인 운용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2)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

### ① 종속형

독일 자원순환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제3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을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자원화 가능” 폐기물과 “활용 불가능” 폐기물로 구분한다. 독일법제는 폐기물의 개념에 순환자원의 개념을 포함시키면서 폐기물법(Abfallgesetz:1986)에서 『자원순환 폐기물법』으로 진화하였다.<sup>70)</sup>

69) 독일 자원순환 폐기물법에 기초한 폐기물 개념론은 김연태, “폐기물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 -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25권제1호(2003), 170쪽 이하, 참조

70) 독일 폐기물 법제에 관한 개괄적 분석은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3판 (박영

일본의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최근개정 2000년)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대형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불요물로써, 고체상 또는 액상의 것(방사성물질 및 이로써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으로 정의한다(제2조). 순환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는 “폐기물”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의 적용범위를 “폐기물 등”으로<sup>71)</sup> 확장시키고 여기에 유용한 “순환자원”을<sup>72)</sup> 포함시킨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법제를 개략하면, 독일에서는 『폐기물 : 순환가능+순환불능』 모형을 취한다(양자는 대등 개념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폐기물”이 상위개념이고 “순환자원”이 종속개념이다. 즉 “순환불능” 폐기물을 기준으로 삼고 “순환가능”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추출해 내기 위하여 좁은 의미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필요하였고 이를 “폐기물 등”으로 정의하였다.

## ②대등형

1976년의 미국 자원보전 및 회수법(RCRA)은<sup>73)</sup> 폐기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환경청(EPA)의 관할권을 확인한다. 자원보전 및 회수법은 “폐기물”(solid waste)을 “쓰레기(garbage), 찌꺼기(refuse), 오니(sludge)<sup>74)</sup> 또는 폐기된 물질<sup>75)</sup>(discarded material)로 정의한다.<sup>76)</sup> 폐기물은 “고상”

---

사:2008년), 522~527쪽, 참조

71) 일본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제2조)은 “폐기물 등”을 『①폐기물, ②사용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집·폐기된 물품 또는 ③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 에너지의 공급, 토목건축의 공사, 농축산물의 생산 등 인간의 활동에 동반하여 부차적으로 얻어진 물품』으로 정의한다.

72) 일본에서 『순환자원』이라 함은 『“폐기물 등” 중 유용한 것』을 말한다(2000년의 순환형사회형성추진 기본법 제2조).

73) the 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 : 42 U.S.C. §690

74) “오니”는 폐기물 처리 설비나 물 공급 설비 또는 공기 오염통제 설비에서 발생 하는 것을 말한다.

75) “폐기된 물질”은 산업·상업·광업이나 농업 활동에서 또는 일상생활(community



(solid)을 기초로 범주가 정해지지만 실제 “고상 폐기물”은 “포집되지 아니한 가스” 형태의 물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물질을 포함한다. “판례에서는<sup>77)</sup> “설비들이 처리하였거나 버렸거나 방치하였기 때문에 폐기된<sup>78)</sup> 물질(discarded material)만이 폐기물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환경청은 공정이 진행 중인(in-process) 물질에 대하여서는 규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sup>79)</sup> 또한 법원은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sup>80)</sup>

미국의 「자원보전 및 회수법」은 폐기물에 관한 제정법적 정의 속에 “재활용 물질”(recycled materials)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RCRA)은 재활용의 촉진을 입법의 목적으로 내포하고 있지만<sup>81)</sup> “부산물”(by-products) 등을 폐기물로 간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활용 물질”에 대한 규제법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sup>82)</sup> 또 연방 환경청은 재활용품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였다.<sup>83)</sup>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미국 법제상 “폐기물”은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재활용이 예정되었거나 가능한 자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최종 처리되어야 할 즉 “폐기된” 물질만을 지칭한다. 위험 폐기물(hazardous waste)로 판정된 지정 폐기물(listed waste)은 「종합적 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의<sup>84)</sup> 관할로 넘어간다.

activity)에서 비롯하는 고상, 액상, 반고상 또는 용기에 담긴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76) the 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 : 42 U.S.C. §1003 (subsection 27)  
 77) *American Mining Congress v. EPA*, 824 F.2d 1177(D.C.Cir.1987) (AMC I)  
 78) “폐기된”의 개념은 “버려진”(abandon) 개념과 “처리된”(disposed of) 개념을 포함한다. “처리된”은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방출 또는 누출을 포함한다.  
 79) *Connecticut Coastal Fisherman’s Assn. v. Remington Arms Co.*, 777 F. Supp.173 (D.Conn.1991)  
 80) *American Mining Congress v. EPA*, 907 F.2d 1179 (D.C.Cir.1990) (AMC II)  
 81) J.B. Ruhl, John Copeland Nagle and James Salzman, *the Practice and Policy of Environmental Law* (Foundation Press : 2008), p.309  
 82) Steven Ferrey, *Environmental Law 2nd.ed* (Aspen Law & Business : 2001), p.284  
 83) *Ibid.*, p.285  
 84)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③ 무관형

우리나라 법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한편 “재활용 가능 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sup>85)</sup>으로 정의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정의에서는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관계가 해석상 도출되겠지만<sup>85)</sup> 문언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 우리나라의 모형[「폐기물 > 재활용 가능 자원」]은 일본의 그것[폐기물 등 > 순환자원]과 유사하지만 “순환자원”이라는 개념 대신에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는 개념을 쓰고 양자[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관계[대등/상위/종속관계 여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개념은 독일[활용폐기물/불능폐기물], 일본[폐기물등>순환자원] 또는 미국[폐기물≠재활용품]의 어느 모형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본의 그것에 유사한 것 같지만, 일본은 “폐기물 등 중 유용한 것”을 “순환자원”이라고 정의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언상으로는 “폐기물”과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정의함으로써 일본의 모형과 논리구조를 달리한다.

구 분	독 일	한 국
법률명칭	순환경제 및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운영기관	- 자치단체로 일원화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원화

(“CERCLA”), 42 U.S.C. §§ 9601-75

85)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쓰레기 등’에 ‘재활용 자원 내지 순환 가능한 자원’이 포함될 수 있어 「폐기물 > 순환자원」이라는 모형이 도출된다.

구분	독 일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 연방정부</li> <li>· 지방 : 주정부(시행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 환경부 자원순환국</li> <li>· 지방 : 지방환경청 및 자치단체</li> </ul>
법률성격	기본법 성격	일반법
주요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자책임원칙</li> <li>- 제품에 관한 책임</li> </ul>	오염자부담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 자치단체(종량제)</li> <li>· 사업장폐기물 : 배출자책임원칙</li> </ul>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발생예방·재활용·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적정처리</li> </ul>
법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의 기본의무(기본원칙)</li> <li>·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수립</li> <li>·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등</li> <li>·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중개업자</li> <li>· 기본적인처리증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사업자·국가의 책무</li> <li>·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등 기준</li> <li>·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취급업자</li> <li>· 폐기물 수출입 신고</li> <li>· 사후관리기금 및 전산처리기구 등</li> </ul>
제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 및 과태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 및 과태료</li> </ul>

좌우동형이나 상하종속 또는 양자준별을 회피하고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문언상 서로 무관한 개념으로 정의함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둘러싼 관계 행정기관의 관할이나 직역[재활용/재제조]상의 다툼을 낳고 규제행정과 조성행정의 차별화를 곤란하게 만든다.

## 2. 결론 및 대안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연자원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용에 환경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와 재활용의 각 단계에서 자원사용의 효율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 내지 재활용의 관념은 종래 “폐기물의 관리”에서 “자원순환”의 단계로 나아갔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진전되고 있다. 자원의 순환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는 “순환사회”의

관념이 도입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와 산업구조 및 일상생활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 (1) 적용범위의 조정

###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예컨대,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경우에 법률의 명칭과 기능간의 괴리가 증대되고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에 관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법률의 명칭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경친화”라는 비전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산업환경실천과제(법 제4조)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종합시책(법 제3조)이 먼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차원에서 초안이 작성되는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중장기계획』을 넘어 현행 『종합시책』을 (가칭) 『산업구조전환종합계획』으로 특화시켜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요청된다. 선결 정책과제들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전문개정보다 그간의 법집행 경험과 관련 업계의 입법의견들을 중심으로 청정생산에 역점을 둔 부분적 정비를 실시한 이후 다시 체계적인 정비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관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이라 약한다)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가능자

원’(제2조제1호)으로 규정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제2조제7호)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개념이 일부 중첩된다.

재활용법은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에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집행 과정에서 관할권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등(제7조)에서도 나타난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는 자원 재활용 목표의 설정과 소요자원조달 및 투자계획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계획수립과 예산운용에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관할이 경합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관할에 속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스템 아래 추진중인 “재제조” 개념과 환경부 관할에 속하는 재활용법 시스템 아래 추진되어 온 “재활용” 개념의 관계를 정리하고, 산업전환법에 의한 『종합시책』(제3조)(예컨대, 청정생산 기술개발 보급사업 중장기계획 : 2005~2009을 포함한다)과 재활용법에 의한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조업자들의 재활용의무(재활용법 제16조)와 자금등의 지원(재활용법 제31조)등에서 정부시책간 부정합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3) 폐기물관리법

종전의 『오물청소법』을 승계한 1986년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개념이 확장되고 폐기물의 관리체계가 자원절약 관계 법률들과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분화되면서 지위와 기능이 현저하게 변모하였다. 현행 자원절약법 등이 “폐기물” 개념을 기초로 “재활용” 등의 개념을 연역하고 있으며<sup>86)</sup>, 순환자원은 그 순환성이 사라지면 폐기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개념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남은 문제는 폐기물 “관리”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현행 법제의 패러다임에 따른다면, 재활용도 여전히 폐기물 “관리”에 속한다.<sup>87)</sup>

그러나 자원순환 내지 순환자원이 “폐기물”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면, 즉 “순환자원”이 “폐기물”에 종속된 개념이라면 순환자원에 대하여 폐기물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순환자원” 개념이 선행하고 폐기물 개념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폐기물 “관리”라는 범주를 축소시키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도 현재보다 “좁혀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의 명칭을 “폐기물처리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2) 법적개념의 정리

### 1) 순환형 사회의 개념화

폐기물에 대응하는 순환자원은 자원순환체계 내지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환자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폐기물 개념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서는 자원 “순환형” 사회의 개념을 먼저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순환사회형성추진기본법(2000)은 “순환형 사회”를 “①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이 억제되고

86) 2008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참조

87) 2007년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참조

②제품 등이 순환자원이 된 경우는 적절한 순환적 이용이 촉진되고  
 ③순환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이 확보되고 ④이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에의 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시키는 사회”로 정의한다(법 제2조). 일본의 순환사회 형성추진기본법이 “폐기물” 개념이 아닌 순환자원 개념을 기초로 순환사회를 정립함은 진일보한 방식이다.

“폐기물 관리”라는 개념에 종속되지 아니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의한다면, “재하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잔여물 또는 배출물을 최소화시키거나 이를 다시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가계·정부 또는 그 연대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의에서는 “부산물·잔여물 또는 배출물의 최소화”에 종래의 “폐기물 발생억제”(reduce)가 포함된다.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종래의 “폐기물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이 포함된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 정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순환사회론에서 언급하는 “자원”은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자원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경제활동 구조 속에 편입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자원순환”이라 함은 “어떠한 제품·부품 또는 원료가 생산·유통 또는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부산물 또는 기타의 물질이나 에너지 등이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활용가능한 최적의 기술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원료로 저장되거나 다시 생산 등에 투입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2)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생각컨대, 독일이나 일본처럼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을 연역해 낸 순환사회 형성과 관련된 법이 지향하는 바와 달리 “순환사회” 이

전의 패러다임이다. 개념 논리상 “순환자원”은 폐기물에 선행하여야 한다. 미국법(RCRA)은 “폐기물”만을 환경청의 규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닌 재활용품을 폐기물과 구분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순환자원의 개념과 폐기물의 개념을 준별함으로써 순환사회의 환경법적 패러다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가 순환사회를 지향한다면, “폐기물” 체계에서 벗어나 “순환자원”의 개념을 선행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즉 순환자원 이후 단계의 “활용 불가능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하는 한편 “폐기물”의 개념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칭)순환사회형성촉진법 또는 (가칭)자원순환기본법 등의 상위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이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개념을 “순환자원”으로 바꾸는 한편 “순환자원”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다시 투입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폐기물’ 중 기술의 발달이나 경제적 가치·수요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얻어 순환성을 회복한 것을 포함한다)”로 재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중 순환자원으로 쓸 수 없는 물질 또는 에너지(‘순환자원’중 변형·변질되거나 경제적 가치·수요가 변하여 더 이상 순환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을 포함한다)”로 재정의하고, 활용가능한 최적의 기술(BAT) 수준으로 자원의 유효한 순환이 불가능한 물질만을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3) 생산자책임의 실효성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책임 제도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당사자의 책임이 의무화되



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규범으로서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산자책임과 관련하여 법집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항목은 재활용의무율(법 제17조)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법 제19조)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법 제17조제1항).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7조제2항). 재활용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한다(법 제19조제1항).

생산자책임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요건과 등록 그리고 면제대상과 면제의 요건 및 불복절차 등이 문제된다. 재활용 의무이행에 대한 감시와 관계자 등의 출입조사권한 및 정보청구 등이 아울러 문제될 수 있다. 재활용의무의 부과가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용편익(BC)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필요 최소한의 의무수준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행 재활용 법제는 생산자책임의 시행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법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4) 배출권거래제의 검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배출권이라 일종의 오염권에 해당하면 명령형 규제를 경제적 도구로 변형시킨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매립량을 할당하고 이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의 폐기물 수거 당국들을 대

상으로 폐기물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sup>88)</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반입수수료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를 채택하였다(1995년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법 제5조의 2).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한다면, 폐기물의 반입량(cap)을 할당하고 여기에 거래제(trade)를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5) 재활용과 재상품화

“재활용”과 “재상품화”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재활용과 재상품화의 구분 및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문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재활용”을 “순환자원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재상품화를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재상품화”를 “순환자원 또는 폐기물로 된 기계·기기·가구·제조물·건조물 등의 부품 또는 재료를 분리하여 완제품 생산용 부품 또는 재료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을 제외한다)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재활용과 재상품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자원의 재활용 또는 재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사용업종, 재생이용업종 및 재상품화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재사용제품, 재생이용제품 및 재상품화제품의 판단기준과 표시기준을 정하여 공표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하고 “법정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고시·공표와 관련하여 재활용과 재상품화의 관할이 중첩되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할을 정한다”는 보충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88) Waste and Emissions Trading Act of 2003, the U.K.

### (3) 법률상호간의 정합성

#### 1) 분법화의 정합성

우리나라 자원절약 내지 재활용 관련 법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게 분법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행법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또 “법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개별 부문의 재활용 시행법들은, 2007년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 중장비 또는 항공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자원절약 법률들의 분법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자원절약 내지 재활용 관련 법률들의 계열화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순환을 이념으로 상정하면서도 순환자원의 독자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따라서 폐기물법과의 관계가 명료하지 못하여 때때로 행정관할의 분장 등에 장애가 된다. (가칭)순환사회형성 촉진법 내지 (가칭)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활용 관련 법률들이 분법화된다면 선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2004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대상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sup>89)</sup>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89) 여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

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청정생산기술”(법 제2조제1호)의 개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은 개발과 보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원순환과의 접점이 결여되어 있다.

## 2)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

### ① 표준화 법률과의 연계

국가표준기본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계가 필요하다 : ①표준기본법(제24조)의 환경경영(ISO)과 산업구조전환법(제3장)을 연계시킨다. ②표준기본법(제28조)의 “산업구조고도화” 부분과 산업구조전환법(제2장)을 연계시킨다. ③자원순환형 표준의 설계와 청정생산 기술의 개발을 연계·특화시킨다.

### ② 법률 명칭의 변경

“순환자원”과 “폐기물” 개념이 재정리된다면,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법률들이 이를 받아주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총칙편에 “폐기물”의 개념과 범주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지도적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가칭)“재활용촉진법”으로 개칭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이 추구하는 “자원절약” 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은 상위법에 맡기고 재활용촉진법은 “재활용” 영역으로 특화시킴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 ③ 폐기물관리법으로의 이관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또는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재료·용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제12조)은 조만간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리법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순환자원 단계보다 “폐기물” 단계에서 부과함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제43조)도 폐기물관리법의 관할로 넘겨야 할 것이다. 방치폐기물(제2조제6호)은 당해 사업자가 이미 재활용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순환자원이 아닌 “최종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함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 ⑤ 에너지 순환 체계와의 접목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sup>90)</sup>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만을 상정한다. 그러나 자원절약은 자원회복의 상위개념이다. 자원순환은 에너지 “순환” 자체에 주목하여야 한다. 현대식 첨단 건물들이 대형 유리 외벽 등으로 온실화되면서 내부에 엄청난 열이 축적되며 이는 냉방용 전기 기타의 자원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후변화 대응책은 건물의 에너지 순환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자원순환과 만난다.

자원절약은 폐기물로부터의 열에너지 회수 또는 폐열의 재활용을 넘어 에너지 자체의 절약을 요구한다. 현행 폐기물·자원절약 관련법은 에너지 순환구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2006년의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제3조)에서 “산업·환경·안보·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열거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구체적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담고 있지 않다. 건축·에너지·운송 관계 법률들에서도 “폐기물”의 개념을 순환자원 내지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90)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⑥ 해양환경관리법과의 연계

재활용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환경매체간 “보충성”의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재활용 → 육상처리 → 해양투기의 순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처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법집행기구간 갈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련 법률 상호간 환경비용의 부담 내지 전가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4) 자원순환형 체계를 위한 대안

앞에서 제시한 법제정비 방향에서는 현행 관련법률들의 준치를 전제로 부분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촉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등에 관한 법률들 상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법정계획들의 수립과 이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부처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 2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제와 행정을 아우를 수 있는 촉진법[예컨대, 순환형 사회 형성촉진법] 내지 기본법[예컨대, 자원순환기본법]의 출현이 필요하다. 새로운 입법은 경제적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경제활동을 유도·추진함으로써 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대안은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준치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폐지(대체입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을 전제로 한다. 아직 입법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대안에 관한 본격적인 입론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91)

91) 이하의 각 장에서 표기한 내용 중 “○”표 부분은 조문체계를 구성할 때 활용될

1) 총 칙

- 법의 목적
- 용어정의
- 적용범위
-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
  -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 물질의 활용
  - 에너지 회수
  - 공공 위해성의 최소화
-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의무
  - 자원활용
  - 무해(無害)분리
  - 환경성의 고려
  - 경제성의 분석
- 주체별 책무
  - 정부
  - 공동체 : 지자체 · 마을 · NGO · 협회 · 단체
  - 기업 : 제조 · 유통 · 서비스 · 재활용
  - 소비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계 획

-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수 있는 주요항목들을 제시한 것이고 “●”표는 주요항목에 담을 수 있는 주체어들이다.

## 제 4 장 법제정비 방향

- 공동체계획
- 기업계획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계획간 연계 : 정부계획 · 공동체계획 · 기업계획 상호간의 연계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표준화 계획과의 관계
  - 산업구조 전환촉진 계획과의 관계
  - 폐기물처리 계획과의 관계
- 계획 등의 이행촉진과 평가
- 자원순환촉진위원회

### 3) 자원의 순환

- 제품설계시의 고려 :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
- 환경경영(표준화 · 규격화) : 재활용제품의 규격 · 품질기준
- 재이용
- 물질의 활용 : 재생
- 에너지 회수
- 연료화
- 퇴비화
- 사료화
- 위해성의 최소화 : 환경보전 · 공공복리

### 4) 자원의 절약

- 전생애(LCA)의 고려
- 전통지식의 응용
- 국내적 처리
- 제품광고의 방식
- 구매요령



- 소비자행동
- 물물교환의 장려
- 중고품 유통·수선의 촉진

#### 5) 폐기물 발생량의 억제

- 先활용 · 後처분의 원칙
- 제품수명의 표기와 고려 : 부담금·부과금 등과 연동
- 가옥과 가구의 일체화
- 사업장과 비품의 일체화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폐기물부담금
- 소비자의 의무 : 폐기물 배출자
- 사업자의 의무 : 생산자·판매자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 회수·재사용을 위한 보증금 : 빈용기보증금

#### 6) 자원의 활용

- 무해분리
- 분리후 수거·보관
- 활용방식
  - 발생·처분지역의 고려
  - 제품·물질의 형태·성상·내용물의 고려
- 표지의 부착 : 분리배출표시
- 주의의 촉구 : 폐기물을 운송하는 제3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
- 경제성의 분석
- 환경성의 고려 : 최종처분과 재활용의 환경성을 형량후 결정

7) 기반의 조성

- 정보체계의 구축
- 자원순환장의 조성
- 환경인증
- 자율관리 : 단체협약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자발적 협약(VA)
- 소비자교육
-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
-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 국제협력의 증진

8) 보 칙

- 순환자원의 배출등 조사
- 보고 및 검사
- 법제상의 조치
- 조례의 제정
- 권한의 위임·위탁
- 부과금의 부과·징수
- 부과금등의 용도
- 과태료의 부과·징수

9) 부 칙

- 발효일
- 다른 법률의 개정
- 경과조치

## 참 고 문 헌

- 전재경,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IV)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정비, 한국법제연구원, 2007. 12. 13
- 이남웅 외, 폐기물관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2006. 9.
- 전재경, 해양투기 폐기물의 매체간 통합관리 및 절차적정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한국해양연구원, 폐기물 해양 배출제도, 해양수산부, 2006. 2.
- 박혜경 외, 제재조 및 지속가능제품개발 국제심포지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5. 9.
-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판례집,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5. 6.
- 한기주·곽대중, 제재조 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구원, 2004. 11. 3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생산 기술개발 보급사업 중장기계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4. 6.
- 오용선 외,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001. 3.
- 전재경, 현행법제개선방안연구(IV) -쓰레기 관리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5. 12. 30
- 신방섭, 자원 리사이클링,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3. 10 15
- 日本環境認證機構, ISO環境法 [改訂第5版], 東洋經濟新報社, 2008

참 고 문 헌

J. B. Ruhl · John Copeland Nagle · James Salzman, *The Practice and Policy of Environmental Law*, Thomson, 2008.

Kathryn L. Schroeder, *Environmental Law*, Thomson, 2008.

Jane Holder ·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Cambridge, 2007.

Steven Ferrey, *Environmental Law*, Aspen Law&Business, 2001.